

2024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Compliance
Guide Book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우리 포스코PS테크는 지난 해 '안전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고의 정비사업회사'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하여 각 부문에서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노력해온 결과 경영 전반에 걸쳐 첫 걸음을 잘 내디뎠습니다. 이제 출범2년차로서 포스코그룹의 일원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다방면의 지속적인 체질 개선 노력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정경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윤리경영, 준법경영은 선택이 아닌 기업경영의 필수적인 핵심가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회사도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동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며,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공생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2023년 9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회사와 임직원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능동적,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 프로그램입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이나 민·형사상의 처벌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등 당사에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전 임직원들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여 각자의 일상업무 속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물품 구매, 하도급 등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업무 처리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공정거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철저한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포스코PS테크 대표이사 공윤식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이병삼입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이 강화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회사는 지난 해에 내부 준법 프로그램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였고,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되새기고 실제 업무를 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CP 운영을 위한 제규정을 수립하고 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점차 심화 운영함으로써, 업무 수행 전반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Risk를 찾아내어 예방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 여러분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업무수행시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심결 사례, 업무시 유의사항,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편람을 기준으로 삼아 일상 업무에서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이 병 삼

■ 공정거래 자율준수 CEO 메시지	02
■ 자율준수관리자 발간사	03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08
2. CP의 핵심 8요소	10
3. CP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제도	13

II

공정거래법 실무

1.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17
2.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19
2.1. 부당한 거래거절	19
① 공동의 거래거절	19
② 그밖의 거래거절	21
2.2. 차별적 취급	28
① 가격차별	28
② 거래조건차별	31
③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32
④ 집단적 차별	34
2.3. 거래상 지위 남용	40
① 구입강제	42
② 이익제공 강요	43

③ 판매목표 강제	44
④ 불이익 제공	45
⑤ 경영간섭	48

III

하도급법 실무

1.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 취지	56
2. 하도급 거래란?	57
3. 적용범위	60
4. 법 적용대상 기간	74
5. 위반시 제재	75
6. 상생협력법과의 비교	86
7.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7.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93
① 서면발급의무	93
② 서류보존의무	97
③ 선금금 지급의무	107
④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113
⑤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118
⑥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의무	130
⑦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137
⑧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143

7.2.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148
②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158
③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169
④ 부당반품 금지	177
⑤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182
⑥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196
⑦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및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199
⑧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204
⑨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206
⑩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	212
⑪ 부당특약의 금지	216

7.3. 발주자의 의무사항

①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222
--------------------	-----

IV 공정거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1. 공정거래법 관련 체크리스트	226
2. 하도급법 관련 체크리스트	229

V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238

포스코 PS테크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요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1.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이란?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법규 준수에 관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법규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위반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 프로그램
- CP는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준법의식을 기업의 문화로 체화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자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일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1.2 CP운영의 필요성

① 회사의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 시켜줍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노력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② 법 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③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공정경영 실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습니다.

④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인정되거나,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CP의 핵심 8요소

2.1 CP의 도입 및 운영방침의 수립

- 경쟁법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이 중요하며, 경쟁법의 엄격한 준수가 경영정책의 중요한 요소임을 행동강령이나 준수정책을 통해 공식적 문서로서 조직 내·외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함.

2.2 최고 경영진의 지원

-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명확하고 충분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조직 규모에 적합한 인적·물적 자원이 제공되는 등 최고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

2.3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해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최고경영자가 아닌 임원을 CP 운영 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함.

2.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 회사는 자율준수 관리자의 책임하에 세부지침서로서 활용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야 하고, 임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배포하여야 함.

2.5 교육훈련프로그램

- 기업 내부에 자율준수 관행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에게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경쟁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최고경영자 및 임원(자율준수관리자 포함), 그리고 법 위반 행위의 가능성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에게는 보다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6 사전 감시체계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법 위반 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으므로 일상적인 업무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하고, 법 위반 발생시 이를 자율 준수관리자 및 최고경영진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2.7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 법 위반 행위를 기업 스스로가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임직원의 자발적인 경쟁법 준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함.

2.8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3. CP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제도

3.1 경감제도의 의의

- CP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3.2 CP등급평가 인센티브

- CP등급평가를 6등급으로 구분하여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

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면제 혹은 감경

CP 등급 (유효기간 2년)	시정조치 공표 명령		적용대상
	간행물 공표 크기, 매체수	사업장 공표, 전자매체 공표기간	
AAA (최우수)	2단 하향조정	단축	-공정거래법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제52조 -하도급법 제7조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등
AA (우수)	1단계 하향		
A (비교적 우수)			

② 직권조사 면제

CP 등급	직권조사 면제	적용대상
AAA (최우수)	2년	-공정거래법 제45조 (단, 부당지원행위 제외)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등
AA (우수)	1년 6개월	
A (비교적 우수)	1년	

③ 과징금 감경('24.6.2 시행 예정)

CP 등급	과징금 감경(최대)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
AAA (최우수)	15%(20%)	-CP담당자의 위반 행위 개입 -CP 도입 전 발생 위반 행위
AA (우수)	10%(15%)	-부당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1~4호 및 8호) -고위임원(이사 이상)의 위반행위 직접 관여

* 추가 감경요건

: 조사개시 전에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위반 탐지·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최대 5% 추가 감경)

포스코 PS테크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II

공정거래법 실무

◎ 한페이지로 보는 공정거래제도

■ 공정거래법상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구분	내용
불공정 거래행위	<p>-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p> <p>⇒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공정거래법 제45조)</p> <p>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 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 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부당지원행위)</p>
부당 공동행위	<p>-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p> <p>⇒ 부당공동행위 유형(공정거래법 제40조)</p> <p>①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② 거래조건 설정 ③ 거래제한 ④ 시장분할 ⑤ 설비제한 ⑥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협정 ⑦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 관리 ⑧ 입찰담합 ⑨ 기타 그 밖의 행위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p>
부당 지원행위	<p>-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p> <p>⇒ 부당지원행위는 개념상으로는 독립된 기업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동일 기업집단내의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통상 '부당내부거래' 라고 함</p> <p>⇒ 부당내부거래 유형(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별표2의 제9호)</p> <p>① 부당한 자금지원 ②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 ③ 부당한 인력지원 ④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p>

1.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1.1 불공정거래행위란?

-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공정거래법 제45조)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행위의 유형을 9가지로 열거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2조의 별표2에서는 9가지 유형, 29가지 행위를 열거하고 있음.

--
불
공
정
거
래
행
위

유
형
--

01	거래거절
02	차별적 취급
03	경쟁사업자 배제
04	부당한 고객유인
05	거래강제
06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
07	구속조건부 거래
08	사업활동 방해
09	부당한 지원

경쟁
제한성

+

불공정성

1.2 위법성 판단기준

- 위법성의 핵심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공정거래 저해성**에 있음.
- 공정거래 저해성은 '부당하게'와 그 의미가 동일하며,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임.
 - * **경쟁제한성**: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
 - * **불공정성**: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
- **판례, 학설, 공정위** 모두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행위유형별로 나눠 당해 행위의 특성, 거래당사자의 지위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1.3 위반시 제재

구분	과징금	벌칙	비고
거래거절 ~ 사업활동 방해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매출액 없는 경우 5억 이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동시적용 가능
부당지원 (특수관계인 포함)	관련 매출액의 5% 이내 (매출액 없는 경우 20억 이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2.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2.1 부당한 거래거절

●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를 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가진다면 법 위반에 해당

① 공동의 거래거절(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1.가)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 중단,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이런 행위는 하면 안돼요!)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공급거절,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 거래계속의 거절 등이 포함됨
-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
 - ↳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 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음
- 공동의 거절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 위법성 판단기준 |

-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 공동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됨.

■ 사업자들의 공동의 거래거절이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됨

- 재고부족,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공동의 거래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특정사업자가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하더라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사전에 합리적인 거래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와의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와 '부당하게'의 구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와 '부당하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

- '정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 유형은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되어 행위의 외형이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행위자에 있음.
-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 유형은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행위의 유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불공정성과 효율성 증대효과·소비자 후생 증대효과 등을 비교 형량하여 경쟁제한성, 불공정성의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위법한 것으로 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성을 입증해야 함.

② 그 밖의 거래거절(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1.나)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의 거래거절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사업자 단독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공동의 거래 거절 대상 행위와 동일
 - ↳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 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음
- 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사업자 단독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②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이 포함.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됨.
- ③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음.

| 위법성 판단기준 |

1. 거래거절 물품, 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2.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3.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4.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등
5.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

Ⅰ 합리적인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Ⅰ

1.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2. 거래 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이외에 다른 대응 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
3. 당해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 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4. 단독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①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이 행해지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경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경우
- ②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합리적 기준 없이 국내에 생산자가 우리 회사 뿐인 제품에 대해 특정사업자의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 우리 회사 제품 중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거래 상대방이 용이하게 다른 거래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달성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독과점지위의 강화, 계열회사의 지원, 끼워팔기, 재판매가격 유지 및 배타 조건부 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연계된 경우
- ③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함으로써 당해 물품·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것만은!

☞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거래한 특정사업자와 거래를 중단 또는 수량을 현저히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포스코PS테크 OO프로입니다. 이번 △△설비 00부품 구매 건에 관련해서 말인데요. 귀사에서 그동안 꾸준히 공급해 주셨는데 다음 달부터는 그리실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구요? 저희가 뭐 그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하나요?”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 또는 상품·용역의 수량,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합니다.

● 심결례

사례 ① 포스코는 협력작업 계약에 따라, 선재공장에서 제품소재 및 제품의 입출하·절단·연마 등의 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는 화성기업(주)의 대표에게 면담요청을 하여 협력작업에 대한 사업양도를 요구하였으며, 화성기업(주)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9년 12월 3일 3년 기간으로 연장한 재계약의 만료시점인 2000년 3월 31일에 거래를 종료하고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사실이 있음

심결요지 화성기업(주)는 포스코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를 포스코 사업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본 협력작업과 같은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포스코 이외의 거래처를 확보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포스코는 화성기업(주)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으며, 또한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협력작업에 대한 사업양도를 강요한 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경영간섭에 해당함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재계약여부는 계약 당사 자의 자율적 판단 사항이나, 본 건은 협력작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설비규모, 대체거래선의 부재 등을 감안할 때 계속적인 거래가 전제 또는 예상되는 계약관계로서 사업양도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타당한 사유 없이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계획임을 통보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서면통지 명령】 30일 이내 시정명령 사실을 협력작업 관계에 있는 모든 거래업체에 서면통지

사례 ② (주)녹십자는 의약품 '정주용 헤파빅'의 국내 독점 생산·공급자로서 2010년 서울대병원 납품업자인 도매상 A의 제품 공급 요청을 물량 한정을 이유로 거절하였음, 도매상 A는 서울대병원에 납품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타 도매상으로부터 헤파빅을 비싸게 구입하여 손해를 보며 납품함

심결요지 2010년 거래거절 당시, (주)녹십자는 전년도 초과 생산량이 존재하였음을 고려시 도매상 A에게 공급할 여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독점생산 의약품 공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舊)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사례 ③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다목적실용위성인‘아리랑 3A호’ 개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세트렉아이(주)에 이어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자신들이 사업권을 승계받기 위해 통합컴퓨터 등 위성부분품의 납품을 거절함. 해당 부품은 아리랑3A호 개발사업자 입찰조건에 관련 부품을 국산화에 공한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부터 납품받도록 명기되어있어 결국 부품을 받지 못한 세트렉아이(주)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하고 차순위로 선정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개발사업자로 선정됨

심결요지 발주자의 제안요청서에 “아리랑3호 개발에서 국산화가 되어 있는 부분 그대로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과 부분체 공급업체로서 참여의사가 없었다면 제안요청서의 해당부분을 사전에 삭제하도록 요청하거나 처음부터 입찰참가를 거부했어야 하나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발주자가 주관한 3차례의 간담회 및 입찰설명회에서 단 한차례도 본체 주관업체와 ‘통합컴퓨터 등’ 부분체와 분리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아 부분체 업체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입찰진행과정에서 개진했다 볼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상의 조건을 준수하거나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또한, 세트렉아이(주)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가 해당 입찰에서 본체 주관개발 사업자로 선정 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성 본체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체 공급을 거절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음을 감안하면 이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2억7백만원 부과

• Q&A

Q1 계약만으로 따라 상대방 업체와 계약을 종료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A1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재계약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자율적 판단사항이고, 계약만료 시점에 즈음하여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사전통보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이는 매우 추상적인 해석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Case By Case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먼저, 계약으로 인해 상대방이 투입하는 인력과 설비규모, 대체거래선의 부재 등을 감안할 때, 계속적인 거래가 전제 또는 예상된다면 계약종료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우리와의 거래를 믿고 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이 큰 경우, 상대방과 이와 관련된 보상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거래종단은 부당한 거래거절이 될 수 있음

Q2 납품업체들이 공동으로 특정점에 대한 구매를 거부 또는 제한해 줄 것을 우리 회사에 요구하고 이에 따라 우리 회사가 특정점에 대한 구매를 중단할 경우 위법인지?

A2 납품업체들의 행위는 공동으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사업자에게 거래거절을 하게 한 행위로서 위법이며, 우리 회사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점에 대한 구매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위법임

Q3 거래종료 당연사유가 아닌 회사 내 정책적인 사유로 인하여 특정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갖춰야 하는가?

A3 회사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거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물색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기간을 부여해야함

Q4 납품업체의 납품실적 부진 또는 규정위반 등이 발생하여 납품업체와의 계약기간 중 납품중지 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A4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 등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등을 위반하여 당사의 신뢰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납품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중단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음

Q5 납품업체와 납품계약이 체결하면서 계약해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최고 없는 계약해지를 규정할 경우 계약의 효력 여부는?

A5 법적인 계약의 효력 여부는 별개로 판단할 문제이나, 포괄적 계약해지 사유와 최고 없는 계약해지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계약내용에 상관없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됨

Q6 거래중인 납품업체들이 공동그룹을 결성하여 그룹의 자격으로 무리한 거래 조건변경 등을 제시할 경우 그 납품업체들과 거래를 중단하면 법 위반인가?

A6 거래여부의 판단은 가격이나 거래조건, 거래수량 등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무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하여 더 이상 거래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거래를 거절하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2.2 차별적 취급

● 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의 차별적 설정이 자기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 법 위반임.

1 가격차별(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2.가)

-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 행위

↳ 가격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상대방이 실제 지불하는 모든 대가. 여기에는 할인율 등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도 포함됨

| 위법성 판단기준 |

1. 가격차별이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2.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행위자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 ① 행위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②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가격차별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수

단으로서 경쟁사업자 배제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③ 가격차별 정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 ④ 가격차별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여부 등. 일회성의 가격차별은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상당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수록 경쟁제한효과가 커질 수 있음.

■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 ① 가격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 가격차별로 인해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② 가격차별에 의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가격차별 대상인 거래상대방이 거래선을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다면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③ 가격차별 정도가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 ④ 가격차별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여부 등. 일회성의 가격차별은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상당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수록 경쟁제한효과가 커질 수 있음.

※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가격차별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① 가격차별이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 등 요소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경우

- ② 당해 가격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격할인을 받는 사업자의 이익, 경제적 효율성 증대 등)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③ 가격차별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❶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❷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2가지 이상의 상품·용역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품·용역과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을 동시에 구매하는 거래상대방(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해 가격면에서 현저히 유리한 취급을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❸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면에서 현저히 우대할 결과 특정사업자가 그의 경쟁사업자 보다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어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
- ❹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매출액 규모, 원가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업체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여 경쟁업체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 또는 열위에 서게 하는 행위
- ❺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대부분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구입량에 따라 누진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반면, 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구입량과 관계없이 통상 적용하는 최대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자들 간의 경쟁력 차이를 초래하는 행위

② 거래조건차별(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2.나)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1.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이는 가격이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건(예: 수량할인 등)을 제외한 계약의 이행방법, 대금의 결제조건 등 거래내용면에서의 차별을 말함.
2. 거래조건 차별은 특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비자에 대한 차별은 포함되지 않음. 다만, 차별대상 사업자가 엄격하게 특정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특정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자 또는 특정지역에 소재한 모든 사업자에 대한 차별도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봄.

| 위법성 판단기준 |

1. 행위자가 거래조건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거래조건 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3. 거래조건 차별 정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거래조건 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5.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거래조건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대금결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구매물량이나 거래기간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에게만 지불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하는 행위
 - 우리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래상대방과 그렇지 않은 상대방을 차별하여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행위
 - 우리 회사 제품만을 취급하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어음거래를 하면서 경쟁사 제품을 병행 판매하는 대리점에게는 현금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③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2.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의 차별행위가 대상이 됨.

| 위법성 판단기준 |

-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되, 가격 등 거래 조건·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계열회사에 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계열 회사의 경쟁사업자에 대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을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①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등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차별 취급하는 경우
- ②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③ 차별취급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①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의 제품 간에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의 제품을 비계열회사의 견적 단가 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한 행위
- ②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동시에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 비해 비계열회사에 대한 결제조건(현금비율, 어음만기일 등)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행위
- ③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 동시에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임가공 단가를 비계열회사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게 지급하는 행위
- ④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보다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행위

④ 집단적 차별(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2.라)

-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1.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행해지는 차별취급이 대상이 됨.
부당한 공동행위와 달리 집단적 차별취급은 합의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차별취급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현실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을 필요 없음. 또한 실제로 차별행위가 행해져야 함.
2. 차별취급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의 차별이 포함됨.

| 위법성 판단기준 |

- 집단적 차별행위의 위법성은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함. 다만, 집단적 차별은 여러 사업자에 의해서 행해지므로 원칙적으로 가격 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비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봄.
 - 행위자가 집단적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집단적 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집단적 차별 정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집단적 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집단적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 등

■ 다음은 합리적 사유로 차별적 취급이 성립되지 않음

- 운송비용, 판매비용, 고객관계의 지속기간, 거래량의 다과,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등의 차이에 따라 거래가격 및 거래조건 등에 차별을 두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이 있더라도 비영리기관이나 자선단체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① 복수의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해 동시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차별 또는 거래조건 차별 등을 행하는 경우
- ② 합리적 이유 없이 복수의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판매단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③ 계열회사와 거래하면서 비계열회사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낮은 대가를 받은 행위
- ④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는 어음으로 대금을 수령하면서 비계열관계에 있는 업체에게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 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상품을 구입 또는 공급함에 있어서 사규, 공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계열회사와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유도하는 경우
- ⑥ 우리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계열회사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당해 회사에게 짧은 기간 동안 물량을 현저히 늘리는 경우

이것만은!

ESF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게만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포스코PS테크 OO프로입니다. 금번 00계약 건 말인데요. 같은 계열회사이고 하나까 수수료를 조금 더 싸게 할 수 없을까요? 다른 회사들보다 딱 0.5%만 할인받는 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 중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심결례

사 례 ① 포스코는 1994년 1월~1995년 5월 중 열연코일을 계열회사와 비계열 회사에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을 비계열사인 동부제강(주) 등 5개사에게 는 제품 출고 전에 선수어음 및 외상 30일로 받는 반면 계열회사인 (주)포스틸로 부터는 제품출고 후 70일 만기어음으로 받은 사실이 있음.

심결요지 비계열회사인 동부제강(주) 등 5개사로부터는 선수어음을 받은 반면에 계열회사에게는 70일 만기어음을 수령함으로써 계열회사에게 판매대금 결제기간을 최고 70일까지 유리하게 한 행위는 거래규모, 판매가격 등 제요인을 고려 하여 검토해 볼 때, 경쟁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차별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위하여 판매대금 결제 조건에 관하여 현저하게 차별취급한 행위로 인정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공표명령】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1회 게재

사 례 ②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하였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는 2018년 3월 처음으로 가공비 6.7% 인상함.

심결요지 위와 같은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행위는 최저임금 및 전력비의 상승은 업종에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이나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만 가공비를 인상하여 주는 행위는 차별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사 례 ③ (주)CJ CGV와 롯데시네마가 1 계열사자사(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

심결요지 수직계열화 영화 대기업이 계열 배급사와 자사 영화를 유리하게 차별 취급하여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 징 금】 CJ CGV(32억원), 롯데시네마(23억원) 【검찰고발】

사 례 ④ 금호터미널(주)는 2006년 10월 ~ 2009년 6월까지 광주 → 서울노선에 대해 임시차 운행 및 결행 관련 배차입력 업무를 자신의 계열회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에게 일임하여 계열회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임시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자신이 직접 결정·시행하는 반면,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자신의 계열회사와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함.

심결요지 임시차 운행 및 결행은 고객의 수요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영업방식으로 이를 위해 배차입력 업무가 선행되어야하며, 배차입력 업무를 자신의 계열회사인 금호산업주식회사에게 일임함으로써 계열회사의 임시차 운행 및 결행을 용이하게 한 반면,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조건 및 거래내용면에서 계열회사에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차별한 행위에 해당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 Q&A

Q1 동일한 제품을 경쟁이 낮은 곳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점에 판매하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 해당 여부?

A1 기본적으로 판매가격은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수요가 매우 많은 지역에서 판매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합리적 차별이라 볼 수 있음.

Q2 특정 판매점에게만 가격할인, 보조금 등 긴밀한 지원을 할 경우는?

A2 운송비 차이나 거래량의 다과에 따른 합리적인 거래조건 차별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판매점에게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다른 판매점이 그 판매점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 가능성이 큼.

Q3 물품을 구입하면서 비계열회사인 A사가 계열회사인 B사보다 견적가격을 싸게 제시하였음에도 B사와 거래하기로 하였다면 법 위반인가?

A3 A사가 공급하는 물품이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거나 불량률이 높은 등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단,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이 될 수 있음.

Q4 협력업체를 매 분기별로 평가하고 이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대금결제를 차별화할 경우 문제가 있는가?

A4 인센티브 성격의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행위는 거래의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Q5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격이나 기술수준이 별 차이가 없을 경우 계열회사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A5 거래상대방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므로, 동일한 조건하에서 계열회사를 선정하였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음.

Q6 우리 회사의 구매정책과는 무관하게 물품 판매업체의 영업정책상 우리 회사의 우수한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다른 회사에 비해 대금결제 조건을 유리하게 해주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가? 만일 계열회사가 그런 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한다면?

A6 모든 거래에 있어서는 항상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거래조건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음. 거래상대방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도 당해 회사의 영업정책이나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음.

2.3 거래상 지위남용

-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 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1) 금지 이유

-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됨. 다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거래상지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민법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을 사업자 간 거래관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거래상지위는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상력의 차이와 비교할 때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2) 거래상 지위 여부

(가)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속적인 거래관계 존재해야 함.

- 계속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게됨. 이렇게 고착화(lock-in) 현상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우월적지위에 있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 상대방은 이미 투입한 투자 등을 고려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 등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됨.
- 계속적 거래관계 여부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위한 전속적인 설비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또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함.

-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적 거래관계라 하더라도 거래처 등을 변경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어려움.
- 통상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검토

(다) 계속적 거래관계 및 거래의존도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라)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관계(예시)

-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 대형소매점과 입점업체,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 제조업체와 부품납품업체, 지역독점적 공공시설 관리업자와 시설임차사업자, 독점적 공공사업자와 계약업체,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 등 간 거래관계
- 거래상대방인 판매업자가 특정 사업자가 공급하는 유명상품을 갖추는 것이 사업운영에 극히 중요한 경우 특정사업자와 판매업자 간 거래관계
-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사업활동에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 특정사업자와 제조 또는 판매업자 간 거래 관계
-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가 장기간 계속되고, 거래관계 유지에 대규모투자가 소요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전환할 경우 설비전환이 곤란하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

(3)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

-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

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다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함.

1 구입강제(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6.가)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구입요청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봄.

| 위법성 판단기준 |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구입강제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

■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을 요청할 경우 원하지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위 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①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② 이익제공 강요(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6.나)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거래 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

↳ 경제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 등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됨.

| 위법성 판단 기준 |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이익제공 강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당해 행위의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 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당해 이익제공의 내용과 성격,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① 합리적 이유 없이 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②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자가 상품(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 ③ 합리적 이유 없이 회원권 시설운영업자가 회원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실비보다 과도한 명의개서료를 징수하는 행위

③ 판매목표강제(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6.다)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 제품 공급중단 등을 하는 행위

↳ 대상상품 또는 용역은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어야 함.

| 위법성 판단기준 |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2. 판매목표의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등

↳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목표가 과도한 수준인지, 실제 거래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목표 불이행시 실제로 제재수단이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음.

- ▶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 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나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음.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① 거래상대방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단가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의 판매량이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④ 불이익제공(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6.라)

-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대상 행위 |

1.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함.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사항, 저가매입 또는 고가판매, 가격(수수료 등 포함) 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계약해지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됨.
2.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거래조건을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음. 다만,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절차에 의해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계약 기간 중 부당한 거래 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 해지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을 설정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2. 설정, 변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 등

- ▶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 판단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거래조건 설정·변경 】

- ①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갑'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②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 '갑'이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③ 계약 유효기간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행위
- ④ 계약서상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계약단가가 고가라는 지적이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이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⑤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⑥ 계약기간중에 자기의 점포 장기임차인에게 광고선전비의 부과기준을 일방적으로 상향조정한 행위

【 불이익 제공 】

- ① 설계용역비를 늦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거래 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②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2%로 약정하였으나, 준공검사이 일방적으로 20%로 상향조정하여 징구한 행위
- ③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반품을 포기한 경우
- ④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⑤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자가 물가변동을 인한 공사비 인상 요인을 불인정하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불지급하는 행위
- ⑥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거래상 지위 남용성 거래거절)

5 경영간섭(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6.마)

-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1.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 하는 행위
2. 판매처의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자금 출납 등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경영간섭이 부당한지 여부 등
 - ※ 의결권의 행사나 채권회수를 위한 간섭으로서 법적 근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 또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수단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① 대리점 등 판매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현찰판매 또는 직접판매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설명 및 상담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경영효율성의 제고 또는 상품의 안전성확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경영간섭의 의도 및 목적,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경영간섭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 판단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①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또는 판매내역 등을 조사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 ② 금융기관이 채권회수에 아무런 곤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대출해준 회사의 임원선임 및 기타 경영활동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대출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
- ③ 상가를 임대하거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취급품목이나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거나 자신의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 ④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 또는 협력업체의 업무용 차량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
- ⑤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판매점의 임직원을 일정수 이상 유지하도록 하거나 업무용 차량을 몇 대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행위
- ⑥ 경영지도라는 명목하에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과도한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⑦ 납품업자가 타 거래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

이것만은!

☞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안 됩니다.

“포스코PS테크 OO프로입니다.. 귀사의 △△과장님 계시죠? 전 이 사람이 귀사에서 근무하는 한 계속 거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매너도 없고, 매번 약속을 어기니까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당장 내보내시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시든지 안하면, 다신 귀사에 발주하는 일 없을테니 그리 아세요.”

⇒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 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합니다.

● 심결례

사례 ① 한국야쿠르트 는 시장변동 상황, 근무일수 및 전년도 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지점별, 제품별 다음년도 판매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12월 각 지점에 통보하였음. 또한 판매목표 달성률 등이 평가항목으로되어 있는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15개 대리점에 패널티를 부과하여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경고조치를 하면서 벌점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함.

심결요지 한국야쿠르트가 위탁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래특유의 투자존재 여부, 거래의존도, 거래처 이전의 용이성,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등 여러요소를 판단하여야 함. 본 행위에서는 위탁대리점이 우유대리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점, 다른 거래처를 선택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시 한국야쿠르트가 위탁대리점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있음. 한국야쿠르트가 위탁대리점에 대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판매목표 금액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사례 ②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1,849개 대리점 전반에 걸쳐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임의공급방식으로 구입을 강요하고,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 판촉사원의 파견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리하였음에도 대리점과의 사전협의 없이 진열 판촉사원 임금을 50% 이상 전가함.

심결요지 남양유업은 법률자문·내부검토 등을 통해 대리점에 임의적 주문할당이 위법한 구입 강제에 해당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지속하였으며, 진열 판촉사원 투입 및 교체여부를 결정하고 근무시간, 근태관리 및 급여 등

제반사항을 결정·관리하는 등 실질적 고용주임에도 대리점에 급여를 부담시켜 (舊)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 징 금】 총 123억원
【검찰고발】

사례 ③ 배달앱의 하나인 요기요는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상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에서 보다 음식점으로 직접 전화 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 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팀을 만들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으며, 최저가보상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 음식점을 적발하여 판매가격 변동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함.

심결요지 공정위는 요기요에 대해 배달앱 2위 사업자로, 배달 음식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 사업자로 판단하고, 요기요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 징 금】 4억 6,800만원

사례 ④ 쿠팡(주)는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였음.

심결요지 쿠팡(주)의 행위는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납

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례에 해당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향후 재발 방지명령,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과 징 금】 총32억 9천 7백만원
 * 대규모유동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내용임

사례 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3.20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카카오톡(APP)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중개 서비스에서 가맹 기사를 우선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함.

심결요지 카카오모빌리티(주)는 일반 호출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획득한 이후 자사 가맹택시 가입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사 가맹택시 기사 수익을 극대화하고 자사 가맹택시 기사가 더 많은 호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차방식을 변경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판단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 징 금】 271.2억 부과

• Q&A

Q1 판매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 판매점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관한 정보, 매출 상세정보, 생산/판매/재고 현황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모니터링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가?

A1 판매점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확보하고 동 정보들에 근거하여 판매점의 경영에 간섭을 하는 등 부당한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모니터링 자체만 가지고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단, 현실적으로 모니터링 과정에서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간섭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Q2 판매점이 기 거래실적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분기 판매계획을 초과해서 구매한 경우 초과량에 대하여 가격을 할인해 주면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하는가?

A2 계획량을 초과하지 못했을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량을 초과했을 경우 일정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판매계획량은 판매점이 전 분기 실적 등을 감안하여 구매하겠다고 요청하는 양을 기준으로 상호 결정한 것이고, 또한 판매점에게 정상적인 마진을 보상해준 상태에서 순수하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라면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포스코 PS테크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Ⅲ

하도급법 실무

1.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 취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대기업)와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가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 하도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통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거래상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함.

1.1 하도급법의 특성

■ 민법 내지 상법의 특별법

- 하도급법은 강행법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법 적용을 배제하지 못함.

■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우선 적용됨.

■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특별법

- 건설산업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법, 정보통신 공사법 등과 중복 적용가능. 단, 위 법 적용이 하도급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됨.

■ 하도급법은 국내법

- 발주자가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국내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만 하도급법이 적용됨.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가진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됨.

2. 하도급 거래란?

2.1 개념

■ 하도급법상의 하도급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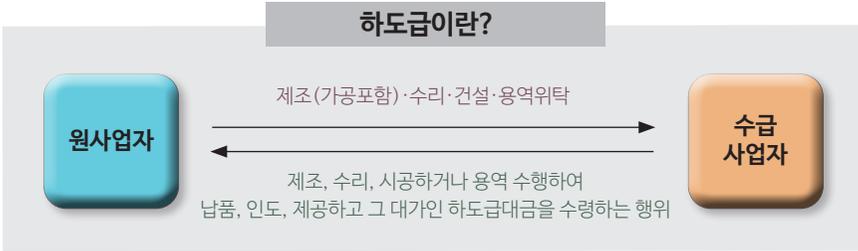
-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참조)

* 용어(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3항 참조)

- 발주자 : 물품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용역을 수급인에게 도급(일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 하는 자
- 원사업자 :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아 중소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자
- 수급사업자 :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중소기업자

잠깐!

- 발주사 없이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 등을 위하여 당사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도 하도급에 해당함.
- 하도급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사가 됨.



2.2 구조

- 하도급법은 크게 목적 및 적용대상, 원사업자의 준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발주자의 준수의무사항, 수급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개조로 이루어져 있음. 이 중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규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발주자의 의무사항,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2.3 하도급법 상 규제 내용

◆ 원사업자

의무사항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제3조
선금금 지급	제6조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제9조
하도급대금 지급	제13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13조의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	제16조
공급원가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

금지사항			
부당한 특약	제3조의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제12조의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제4조	기술자료 제공 강요 및 요구	제12조의3
물품 등의 구매강제	제5조	부당한 대물변제	제17조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제8조	부당한 경영간섭	제18조
부당반품금지	제10조	보복조치	제19조
하도급대금 감액	제11조	탈법행위	제20조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제12조		

◆ 발주자

의무사항	법조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제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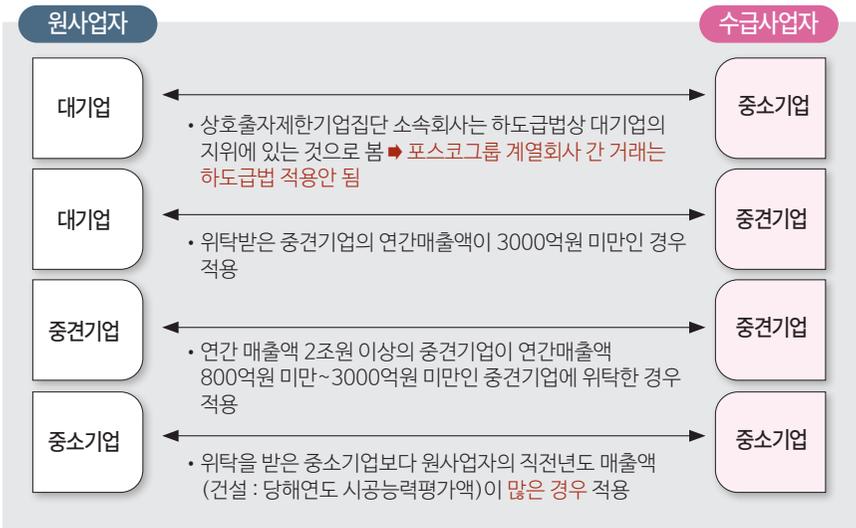
◆ 수급사업자

의무·준수사항	법조문
서류보존의무	제3조
계약이행보증(건설위탁)	제13조의2
신의칙 준수 및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 거부	제21조

3. 적용범위

3.1 법 적용 대상 사업자 요건

① 적용대상 사업자 (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



| 중소기업 정의 |

- 제조·서비스 업종별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3개년 평균·연간매출액 4백억원 이하~1천5백억원 이하
- 건설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3개년 평균·연간매출액 1천억원 이하

| 중견기업 정의 |

-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 공공기관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아닌 기업

■ 법 개정에 따라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로 보호되는 경우

- 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이하 '대기업')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 ②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② 적용제외 대상 중소기업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 연간매출액(시공능력 평가액)이 일정규모 미만 중소기업은 원사업자 대상에서 제외

위탁 유형	연간매출액(시공능력평가액)
용역위탁	10억원 미만
제조·수리위탁	30억원 미만
건설위탁	45억원 미만

■ 업무시 주의사항

-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함.
- 공정위 하도급 조사시 기본이 되는 것은 조사 대상 범위의 확정이므로, 대기업자인지 혹은 중소기업자인지 정확히 구분되어야 수검시 대응 활동이 원활할 수 있음.
 - 수급사업자의 구분을 평소에 명확히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조사에 대비해 선조치를 하면서 주지 않아도 될 지연이자 혹은 대금 지급을 불필요하게 선지급 하거나 조사 범위의 확대 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업무 Loss발생, 조사시 늑장 대응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됨.

3.2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성에 착안하여 그 업(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를 하도급거래로 보고 있음. 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함.

| ‘業’에 관한 해석 (최신 공정위 심결례) |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 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친 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계속·반복적으로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수행하는 사업자라면 해당되지만, 단순히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 그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로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석, 판단함.

| ‘業’에 관한 판단의 기본원칙 |

- 원사업자 자신의 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것
- 구체적인 범위는 각 범위 고시 내용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참조
- 건설 분야의 경우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도 고려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넓게 해석하는 경향
- 주요 제조 품목,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 표준산업분류표 등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① 제조하도급(제조위탁 : 하도급법 제2조 제6항)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業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① 물품의 제조 ② 물품의 판매 ③ 물품의 수리 ④ 건설

↳ 그 業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 고시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①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

- 제조·수리·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OEM거래 포함). 단,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는 제외함.
-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단, 대량생산 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함.
-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 등
-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 등
- 상기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도장, 도금, 주조, 단조, 조립, 염색, 봉제 등(임)가공

※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으로 간주

② 사업자가 건설을 업(業)으로 하는 경우

-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제조위탁하는 경우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의해 특수한 용도로 주문 제작한 것 : 방음벽, 갑문, 수문, 가드레일 표지판, 주차기, 엘리베이터 등
- 건축 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 건설자재 : 부품에 대하여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 거래관행상 시방서 등 성능, 품질, 규격 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도록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해당됨 : 레미콘, 아스콘 등
- 규격 : 표준화된 자재라 하더라도 특별히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 위탁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 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는 제외되나 규격·품질 등을 지정하여 골재 등을 제조·위탁하거나 석산 등을 제공하여 임가공 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됨.

② 수리하도급(수리위탁 : 하도급법 제2조 제8항)

- 주문에 의해 물품을 수리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예시

- ①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②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③ 발전기수리업자가 발전기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자사의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 등의 수리를 사내에서 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수리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함.
 - * 만약 사내에서 행하여 지지 않고 전적으로 외부에 위탁하는 기계 수리는 해당 사업자의 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리위탁에 해당하지 않음

③ 건설하도급(건설위탁 : 하도급법 제2조 제9항)

- 건설업자가 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①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자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② 건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 ③ 자체 발주공사의 건설위탁
 - 건설업자가 아파트 신축공사 등 건설공사를 자기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 건설위탁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의 건설위탁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자격이 있는 공종에 대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자격을 가진 다른 등록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전기공사업자의 건설위탁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정보통신공사사업자의 건설위탁
 -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사업자가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소방시설공사사업자의 건설위탁
 -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건설위탁
 -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환경관련 시설업자의 건설위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 환경전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에너지관련 건설사업자의 건설위탁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 에너지 관련 시설공사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경미한 공사의 건설위탁
 -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사업자 및 「전기공사사업법」 상의 공사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전기공사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를 상기 법령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 자체 발주공사의 건설위탁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신축공사 등 건설공사를 자기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④ 용역위탁(용역위탁 :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業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이 경우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용역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함.

①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 정보프로그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나 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조합된 것
-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의 영상, 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성과물
- 문자, 도형, 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체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 (예 : 디자인, 상표, 설계도면 등)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 및 연구 및 개발과 관련된 성과물

② 역무의 공급위탁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설계 제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 활동
-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 장소, 경비 등의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 용역위탁의 범위

①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1.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물류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업, 물류시설 운영법, 물류서비스업의 활동
 - 「항만운송 사업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 및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활동
2.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업무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3.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2 규정에 의한 건축물(주거용, 비주거용, 사업 시설을 포함함)의 유지 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청소,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운반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 활동(조경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활동을 포함함)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보프로그램(상용소프트웨어 포함)의 운영 및 유지 보수 활동을 포함함)등의 활동
 - 전산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또는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를 검색 또는 제공하는 등의 활동
5.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사진)촬영 등의 활동
 - 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 수급사업자가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을 별개의 단위로 위탁받은 경우, 동 고시의 적용을 받으며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을 포함한 티브이,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등의 광고제작 편집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용역위탁 중 지식 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의 활동
6. 「공연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공연의 기획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미술 등의 위탁을 하는 활동
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측량, 지질 조사 및 탐사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
 - 「엔지니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
 -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지도제작
8. 이상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② 용역위탁 중 지식 정보성과물의 범위

1.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작성을 위탁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 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한자)나 그밖의 관련 자료(패키지 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 포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 및 특정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의

개발, 공급을 포함)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을 포함),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 마스터플랜, 시스템구축 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개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설치 등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시스템개발을 포함)

-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규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 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성과물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기획, 편성, 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영화 및 동법 제2조 제12호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포함)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게임물
 - 「방송법」 제2조 제17호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포함)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음원, 동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음반, 동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음악파일, 동법 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음악영상물, 동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음악영상파일
 - 티브이,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등의 광고제작 편집물(콘티, 썸네일 등의 작업 및 편집, 음향 등 후반작업(영어)을 포함).
 - 전자상거래 콘텐츠
- 3. 문자, 도형, 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 도형, 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함)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기획, 편성, 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디자인
 - 「상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상표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 규정에 의한 지도
 -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규정에 의한 편집물
 - 설계도면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 및 연구 및 개발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기술시험(결과)서, 검사보고서, 분석보고서, 평가보고서 등의 작성
 - 번역물 등의 작성
 - 시장 및 여론조사 보고서 등의 작성
5. 이상에서 열거한 지식 정보성과물의 공급을 작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하도급법 적용범위와 관련한 사례

법원판단 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의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그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원단이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이거나, 제조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하여 납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위탁에 해당함. (2003누5602판결)

법원판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샘플을 제시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샘플을 만들어 사전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원사업자가 제품의 생산과 강도 등을 미리 지정한 경우 제조위탁에 해당함. (2007누31661판결)

법원판단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 하자보증 등 의무가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계약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2007누 31661판결)

법원판단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건설업자의 '제조위탁' 중 '거래관행상 시방서 등 성능, 품질, 규격 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도록 제조를 위탁하는 것' 으로서, 레미콘은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판시. (2018누52756판결)

법원판단 철근 주문 당시 견적서 및 명세서상에 표준화된 철근의 품명과 규격을 적시하고 있는 반면, 이보다 더 상세하고 특화된 사양서, 도면, 시방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에 의하여 주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18누52756판결)

법원판단 기술사양서 중 일부 제품의 사진에는 다른 회사의 이름이나 로고 등이 새겨져 있고, 해당 업체의 카탈로그에는 각 제품 군별로 일정한 사양이 제시되어 있어 기성품 내지 범용품을 필요에 따라 선택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특수한 사양을 지정하여 수리장비의 제조를 위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경우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2018누38378판결)

법원판단 해외 브랜드사의 고유 사양 및 기술에 의하여 제작, 생산되었고, 범용성 있는 기성제품은 하도급에서 규정한 제조위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2017누46556판결)

법원판단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에 관한 것이고, 일반건설업자로서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소지한 원사업자로서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모두 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사업자와 전문건설업자 사이의 건설위탁은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위탁에 해당함. (2006누2420판결)

4. 법 적용대상 기간

4.1 관련규정

-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단,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조사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되거나 분쟁조정 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한 사건의 경우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함.(하도급법 제23조)

Ⅰ 거래종료일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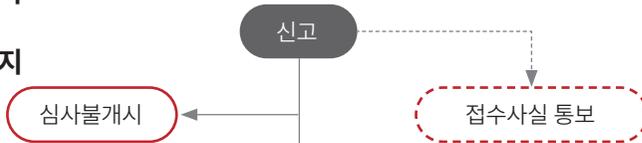
- 제조·수리 및 지식·정보성과물의 제작위탁 :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
- 건설위탁 : 공사가 완공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

5. 위반시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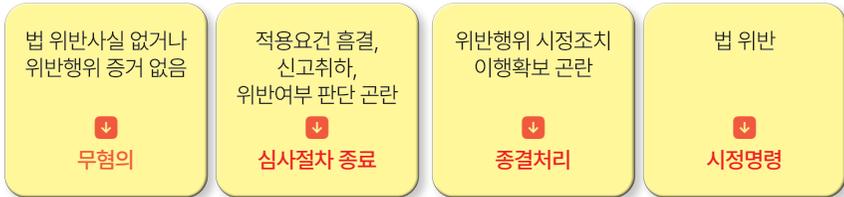
5.1 하도급 사건 처리절차

1 사건의 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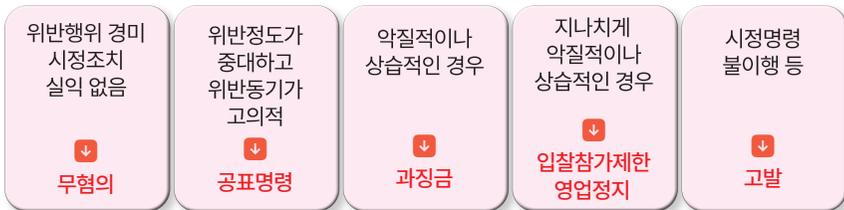
2 사건의 인지



3 조사중지



4 하도급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하도급법 실효성 확보수단)



* 동의의결(제24조의9)

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피해자 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의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법위반 여부 판단을 하지 않음)

5.2 법 위반에 대한 주요제재

구분	
행정적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시정명령, 권고 등)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 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법 위반 금액 비율에 따라 산정,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은 최대 20억원 까지 부과) - 상습 법 위반자 명단 공표 (법 위반 시정권고 3회 이상 사업자 벌점 4점 초과) - 입찰제한(3년간 벌점 5점 초과) 및 영업정지(3년간 벌점 10점 초과)
행정질서벌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처분 위반, 허위 자료 제출 : 사업자 1억원 이하, 개인 1천만원 이하 - 조사 방해, 거부 : 사업자 2억원 이하 - 수급사업자 자료 제출 방해 : 사업자 5천만원 이하, 개인 500만원 이하 - 서면실태조사 : 사업자 500만원 이하
형사적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 2배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부당경영간섭 금지 및 탈법행위 금지 위반 자 - 3억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복조치 - 고발(법 위반 3회 이상 및 벌점 4점 초과) ※ 양벌규정 : 행위자 및 법인 처벌
민사적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배상 책임 - 하도급 4대 핵심 불공정 행위 + 보복조치 ▶ 3배 손해배상 책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당 단가인하(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및 감액 금지) ② 부당 발주취소(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③ 부당 반품 금지 ④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 과징금, 과태료, 벌금의 차이

구분	부과 주체	특징
과징금	행정기관	법규 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
과태료		법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 태만에 대해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
벌금	사법기관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의 일종,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규정

① 벌점부과

-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함).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음.

부과기준		점수
경고	서면 실태 조사	0.25점
	신고 및 직권 인지	0.5점
시정권고나 법 위반 자진시정 및 향후 재발 방지 명령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4항, 제19조 외 위반	2.5점
	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4항, 제19조 위반 (부당한 대금결정, 감액금지, 기술자료 사용, 보복 조치)	2.6점
고발	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4항, 제19조 외 위반	3.0점
	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4항, 제19조 위반 (부당한 대금결정, 감액금지, 기술자료 사용, 보복 조치)	5.1점

※ 벌점 누진제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시정조치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의 누산 점수가 하도급법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점수를 초과하게 되면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제도

· 5점 이상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10점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 누산점수 :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점수

(총 벌점 - 총 경감점수 + 총 가중점수)

② 벌점의 감경기준

· 벌점의 경감은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중 가장 최근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시정조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1개 사업연도 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함.

*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

유 형	경감 점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	90% 이상 : 2점 70% 이상 ~ 90% 미만 : 1점
현금결제비율	100% 이상 : 1점 80% 이상 ~ 100% 미만 : 0.5점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	최우수 : 2점 우수 : 1점
공정위 모범업체 선정	3점
협약평가결과 (동반성장협약, 평가 양호 이상)	최우수 : 3점 우수 : 2점 양호 : 1점

유 형	경감 점수
하도급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활용 (대금 직접 지급)	50% 이상 : 1점 50% 미만 : 0.5점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	(공정위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름)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 50%미만 : 0.5점 50%이상 : 1점 *하도급대금 인상실적 1~5% : 0.5점 5~10% : 1점 10% 이상 : 1.5점 *원재료 가격상승분 대비 대금인상비율을 고려하여 최대 1점 추가 감경

③ 양벌규정

① 규정내용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함.(법 제31조)

② 규정취지

- 양벌규정이란, 법 위반 행위를 직접 행한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처벌하는 것을 말함.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므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벌을 받을 수가 없어 범죄능력이거나 수형능력이 부인됨.
- 따라서, 법인이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양벌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법인 자체에도 벌금형은 부과할 수 있음.

· 하도급법처럼 법인에 대해 양벌규정을 둔 취지는 특히 사전에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4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6항	100	250	500
나. 법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수급 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 ① 원사업자 ② 원사업자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30조의2 제3항	1,000 100	2,500 250	5,000 500
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	50	75	100
라.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석 처분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	2,000 200	5,000 500	10,0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마.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30조의2 제1항 제3호	2,000 200	5,000 500	10,000 1,000
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30조의2 제2항	10,000 2,500	15,000 3,500	20,000 5,000

5 벌금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30조 제1항)
-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규정을 위반한 자
 - 부당한 특약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 선급금의 지급 규정을 위반한 자

- 내국신용장 개설의무를 위반한 자
-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 검사의 기준, 방법 및 시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 부당반품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감액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 하도급대금의 지급 규정을 위반한 자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자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규정을 위반한 자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규정을 위반한 자
-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자
 - 탈법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하도급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2020. 12.1)

Ⅰ 고시 주요내용 Ⅰ

① 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요소 및 반영 비중〉

위탁유형	행위 유형	피해발생 범위	피해정도 규모	부당성
기술유용·기술자료요구· 보복조치·탈법행위	40%	-	20%	40%
원사업자의 작위의무위반*	30%	30%	-	40%
그 외 원사업자의 금지 의무 위반 등**	30%	20%	40%	30%

* 서면발급 및 보존, 신용장 개설, 수령증명서 발급,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제공,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개시 의무 등

** 부당 대금 결정, 위탁취소, 감액, 부당특약, 구매강제, 부당결제청구, 경제적 이익요구, 대물변제, 경영간섭 등

②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

- 피해액을 수치화 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을 최대 30%로 확대됨.

〈과징금 감경사유 및 비율〉

개정 전		개정 후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경우	20% 이내	수급사업자의 피해액을 모두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한 경우	30% 이내
수급사업자의 피해액 중 50% 이상을 구제한 경우	10% 이내	수급사업자의 피해액 중 50% 이상을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	20% 이내

③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 위반행위가 반복 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발생기간에 따라 제재 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음.

④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 과징금 부과율 결정시 행위의 의도 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관행,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되고,
- 경영상황 악화 정도 외에 위탁대상의 범위 및 특성,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 원수급사업자 간 관계, 수급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피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됨.

• Q&A

Q1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일괄 재하도급의 경우, 하도급법 적용여부는?

A1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하도급 법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하도급법상 적용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일괄 재하도급 이더라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음.

Q2 제조업을 하는 대기업이 공장 증축을 위해 중소건설업자와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는지?

A2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자격 있는 건설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 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해당 위탁은 도급계약일 뿐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은 아님.

Q3 제철소 조업 및 정비작업 수행 외주파트너사 중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여부
는?

A3 외주파트너사 중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위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포장, 가공 업체 등은 수급사업자에 해당되나, 청소 등 단순노무 및 운송 등은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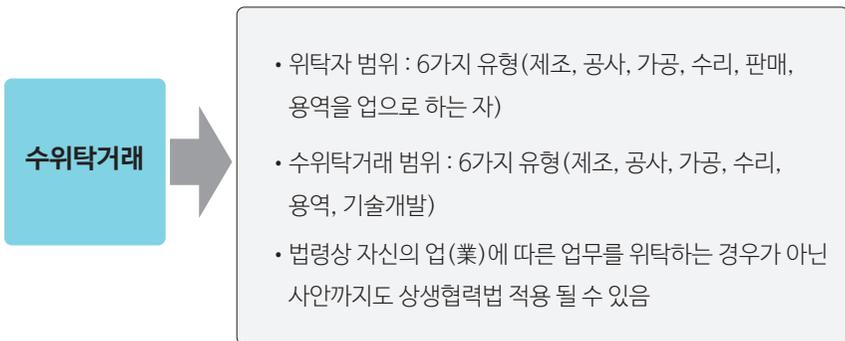
6. 상생협력법과의 비교

6.1 제정 배경 및 상생협력법 적용대상

① 상생협력법 제정 배경

-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동반성장하는 안정된 경제구조를 조성하기 위함.

②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의 의미



구분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적용 대상	·대기업/중소기업 간 및 중소기업간 모든 하도급 거래	·대기업/중소기업 간 및 주요기업 간 모든 위·수탁 거래 - 매출액, 종업원수 제한 없음 ↳ 하도급법 적용 대상 확대

구분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거래 관계	<p>·7가지 하도급 거래만 규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원사업자</th> <th>수급사업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제조위탁</td> <td>제조</td> <td>제조</td> </tr> <tr> <td>판매</td> <td>제조</td> </tr> <tr> <td>수리</td> <td>제조</td> </tr> <tr> <td>건설</td> <td>제조</td> </tr> <tr> <td>수리위탁</td> <td>수리</td> <td>수리</td> </tr> <tr> <td>건설위탁</td> <td>건설</td> <td>건설</td> </tr> <tr> <td>용역위탁</td> <td>용역</td> <td>용역</td> </tr> </tbody> </table>	구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제조위탁	제조	제조	판매	제조	수리	제조	건설	제조	수리위탁	수리	수리	건설위탁	건설	건설	용역위탁	용역	용역	<p>·30가지 유형의 위수탁 거래 모두 포함 (예 : 제조업자의 공사위탁, 용역업자의 제조 위탁 등) ⇒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p>
구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제조위탁	제조	제조																					
	판매	제조																					
	수리	제조																					
	건설	제조																					
수리위탁	수리	수리																					
건설위탁	건설	건설																					
용역위탁	용역	용역																					
준수 사항	<p>·19개 준수사항 부당반품,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관세 등 환급액 지급, 탈법행위, 선금금 지급의무</p>	<p>·19개 준수사항(하도급법과 유사) -기술자료 요구</p>																					
제재 조치	<p>1.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권고/명령), 공표명령, 벌점부과, 교육명령 -과징금/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손해배상(3배 이하)</p> <p>2. 형사적 제재 -공정위 건축고발, 시정명령 불이행, 양벌규정</p>	<p>1.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권고/명령), 공표명령, 벌점부과, 교육명령 -과징금/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통보</p> <p>2. 형사적 제재 -시정명령 불이행, 양벌규정, 의무고발 요청</p>																					

Ⅰ 위탁기업, 원사업자 준수사항 관련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비교 Ⅰ

구분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서면교부 의무	· 약정서 교부 의무(제21조)	· 서면교부 의무(제3조)
서면보관 의무	· 서류비치 의무 (제39조, 시행규칙11조)	· 서면보관 의무(제3조 제12항)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 동종, 유사품의 통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결정 금지 (제25조 제1항 제3호)	· 동종, 유사품의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 금지 (제4조)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기업 지정 물품 구매강제 금지 (제25조 제1항 제5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 지정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 (제5조)
선금금 지급 의무	-	·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제6조)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물품수령 거부 금지 (제25조 제1항 제1호 전단)	·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수령, 인수거부 금지(제8조)
부당한 발주취소 금지	· 제조 의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를 기피하는 행위 (제25조 제1항 제10호)	· 제조 등 위탁 후 수급사업자 책임이 없음에도 위탁 취소 금지 (제8조)
발주 감소 또는 중단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 발주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 중단 금지 (제25조 제1항 제7호)	-
부당한 반품 금지	-	·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제10조)
검사의무	· 객관적, 타당한 검사기준에 따라 공정, 신속한 검사 · 불합격 사유 서면 통보(제23조)	· 객관적, 공정, 타당한 검사기준 · 납품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통지의무(제9조)

구분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부당한 대금감액 금지	·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납품대금 감액금지 (제25조 제1항 제1호 후단)	·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시 정한 대금 감액 금지(제11조)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금지	-	·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 등 경제적이익 제공 요구 금지 (제12조의2)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제25조제1항제12호) · 기술자료 유용 금지 (제25조 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제12조의3 제1항) · 기술자료 유용 금지 (제12조의3 제4항)
기술자료 임치제도	·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임치)함으로써 기술유출 방지 (제24조의2) · 기술자료 임치 요구 수탁기업에게 불이익 제공 금지 (제25조 제1항 제13호)	-
경영상 정보 요구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 정보 요구 금지 (제25조 제1항 제13호의2)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 정보 요구 금지 (제18조 제2항 제3호)

6.2 공정화지침상 위·수탁거래 관련 예시

①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는 것

- 유통업체가 자사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PB 상품의 제조위탁)
- 의류업체가 자사상표를 부착한 의류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고객의 차량을 수리 후 고객과 약정한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리비를 지급 받는 경우, 보험사가 차량 수리의 범위를 정하거나 이에 영향을 주는 등 사실상 정비사업자에게 수리를 위탁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위·수탁거래에 해당
- 제조업자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냉방장비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면서 이에 따른 설치도 같이 위탁하는 경우
- 제조업자가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을 중소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고, 정식 계약 체결 전에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는 기초작업의 이행을 요구하여 중소기업이 이행에 착수하였을 경우
- 레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골프장 등 특수목적으로 개발 및 조성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경우
- 대형마트가 삼겹살을 판매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고기를 특정 부위별로 절단, 분할 혹은 포장해줄 것을 위탁하는 경우

② 위·수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건설회사가 중소기업에게 인력의 파견을 요청하여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건설회사의 지휘명령 하에 파견인력을 근로하도록 하는 경우
- 식품회사가 대리점 계약을 통해 상품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6.3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절차

| 조사개시 |

사유	내용	참고사항
신고	• 누구든지 신고 가능	• 10억원 미만
직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부장관은 특정사항*에 한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조사 가능(상생협력법 제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서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상생협력법 제21조) •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상생협력법 제22조) •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상생협력법 제22조의2)
	• 중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직권조사 가능(지침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상생협력법 제23조) •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상생협력법 제25조)
조정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청 가능 • 특정사항에 대해 조정신청 가능 	• 상동 +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상생협력법 제24조의2)

| 행정제재 |

방법	내용	참고사항
개선 요구	• 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선요구 하여야 함(지침 제11조)	
시정 명령	• 조정신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지침 제19조)	
시정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신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고, 다음 중 하나 해당할 경우 ① 피조사인이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시정이 명백히 예상 되는 경우 ②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불공정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는 경우(지침 제19조) 	

방법	내용	참고사항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지침 제22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 신문에 게재하여 공표 시정명령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상생협력법 제41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권고 불이행에 대해서는 공표명령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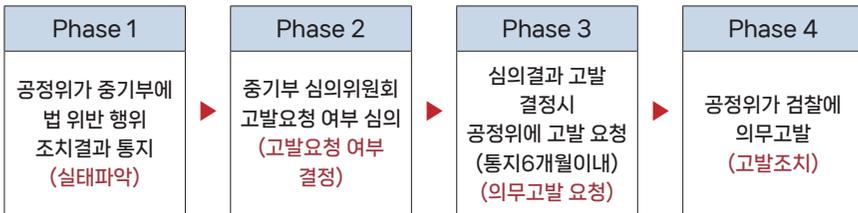
1 의무고발 요청제도

I 제도개요 I

-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 위반사항 통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고발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하는 제도

→ 근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6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2조

I 처리절차 I



- 심의위원회 구성(7인 이내) :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위원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본부장, 기타 중기부장관 위촉인(교수 등)

7.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7.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① 서면발급의무(하도급법 제3조 제1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중요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함.

| 개념 |

- 서면 교부 의무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분쟁 예방 필요성 때문에 공정위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원칙 |

■ 중요 사항(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 발급

-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기재사항(6가지)을 작성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함. 교부된 서면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이 되어 있어야 함.

■ 필수기재사항(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의 내용(수량, 단가 포함)
2.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역무의 위탁시 제외)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기일

- 6.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I 서면의 발급시기 : 사전 발급 I

-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수리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

I 거래 단계별 발급 서면 종류 I

단계	발급 서면의 종류
<p>거래 개시 (하도급 제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하도급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 (제3조 제1항) ②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제3조 제9항,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관련) - 수급사업자로부터 구두발주 내용에 대해 확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
<p>거래 과정 (하도급법 제8-1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제8조 제2항) ④ 검사결과 통지서(제9조 제2항) ⑤ 감액서면 :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물량, 금액, 감액방법 등 기재 (제11조 제3항) ⑥ 기술자료 요구서 : 기술자료 요구 시 명칭 및 범위, 목적, 비밀유지,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대가 등 기재 (제12조의3 제2항) ⑦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내역(증액 또는 감액) 통지서 (제16조 제2항)

■ 위반유형

-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불완전한 서면교부)
- 추가 또는 변경된 위탁 수행 내용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 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위탁 이후에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등 서면을 지연 교부한 경우
-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 계약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야 하나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구체적인 계약서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나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산정이 가능한 약식서류 등을 제공한 경우

| 예외적으로 일부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발급 가능(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 발급이 가능하나,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시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함.
 - ↳ 해당사항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함. (법 제3조 제4항)

| 사전 서면발급 의무 예외 |

-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해,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함.
- 원사업자는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해야함.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이메일 또는 개별계약서 형태로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하도급법상 중요기재사항을 담은 서면발급은 적법한 서면 발급임.
-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발급임.
 -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으나 업종의 특성 등에 비추어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서면발급임.
 - 2종 이상의 계약서가 존재할 때는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에 입각한 서면을 적법한 것으로 봄.

② 서류보존의무(하도급법 제3조 제12항)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법상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 및 하도급 거래의 중요사항을 담은 서면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단, 기술자료 관련 서류(기술자료 제공요구서 등)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간 보존하여야 함.
- 컴퓨터 등 전자매체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보존된 서류도 인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보존서류(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

- ① 하도급계약서
- ② 제조 등의 위탁 목적물의 물품수령증명서
- ③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이 기록된 검사보고서
- ④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등이 기록된 서류(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
- ⑤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록된 서류
- ⑥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등이 기록된 서류
- ⑦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가 기록된 서류
- ⑧ 수급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가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가 기록된 서류
- ⑨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

■ 보존서류 관련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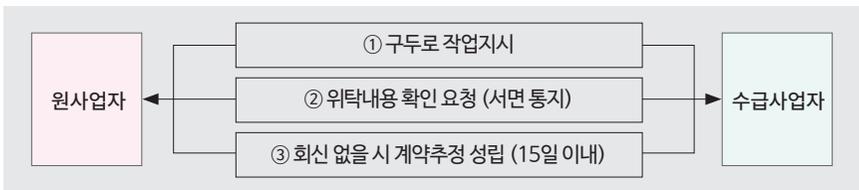
구분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1	· 하도급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9항
3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제2항
4	·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5	·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제3항
6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7년)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7	· 계약변경 내용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이 기재된 서류(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10	· 선금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으로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 지급일과 지급 금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11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12	·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14	·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Ⅰ 하도급계약추정제(하도급법 제3조 제8항, 제9항) Ⅰ

- 원사업자가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일정한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함.

■ 일정한 사항

-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 통지와 회신은 내용증명우편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 제외)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함
 - 인정하는 경우 : 계약의 성립을 서면으로 확인, 향후 분쟁에 대비 가능
 - 부인하는 경우 : 계약의 불성립을 확인하고 작업중단, 하도급업체의 손해 예방 가능
 - 회신이 없는 경우 : 계약 성립 추정, 추후 분쟁 발생시 소송 등을 통한 구제 가능



I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와 공개(제3조의5) |

· 국가 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할 필요가 있는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을 입찰참가자에게 알려야 함

1. 입찰금액
2. 낙찰금액 및 낙찰자(상호, 대표자 및 영업소 소재지)
3. 유찰된 경우 유찰 사유

Do

- *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계약기간이 명시된 새로운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 업계 표준이나 거래 관행의 특성을 근거로 한 공정위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하여 서면에 기재해야 할 항목이나 내용에 대해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함.
- * 발주서면에 하도급법상 정해진 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 서류의 양이 방대하여 보존이 어려워 마이크로필름, USB 등의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
- * 서면 교부시 미확정 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존재하여도, 그 내용이 정해진 경우 보충 서면을 교부함.

Don't

- * 거짓서면 및 서류(허위계약일자, 이중계약(실계약, 허위계약), 허위내용의 서류 사후 작성 등)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아야 함.
- * 하도급대금의 지불이 완료된 시점에서 하도급 대금 지불 전의 관계서류(검수 관례, 반품관계, 하도급대금의 결정 등)를 파기하는 경우
- * 계약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원본을 파기하는 경우
- * 하도급 관련 서류는 증거인멸의 의도로 폐기해서는 안 됨.
- * 협력업체에 하도급 관련 서류등을 3년 이내에 폐기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함.
- *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지 않음(허위서류 보존).
- *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없는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야 함.

업무상 유의사항**■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권장(법 제3조의2) : 의무사항은 아님**

-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건설자재, 전기, 기계,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자기상표부착제품(PB)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공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정보제공 → 표준하도급계약서

● **심결례**

사례 ①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16,681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함. 계약 서면 16,681건 가운데 서면 발급일보다 작업 시작일이 빠른 계약이 7,254건, 서면 발급일보다 최초 작업 실적 발생 월이 빠른 계약이 9,427건이었음.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음.

심결요지 사전에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제공하는 관행적인 '선 시공 후 계약' 행위는 하도급법상 사전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 징 금】 153억원
* 과징금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위탁취소도 포함된 금액

사례 ②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38,45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고 계약 서면 38,451건 가운데 전자서명을 완료하기 전에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6,646건, 공사 완료 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684건, 늦게 발급한 건을 없애고 다시 계약을 맺은 경우가 1,121건이었음.

심결요지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은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적고 당사자 간의 서명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일은 전자서명 완료일

이 되어야 하나, 삼성중공업은 계약 일자를 하도급 업체와의 전자 서명이 완료된 날이 아닌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설정했음.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36억원 및 법인 고발

사례 ③ 성림건설은 2004.5.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2005.2.1 이후에는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따로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음.

심결요지 하도급 거래 기간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종전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원사업자는 연장된 계약 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서울고등법원 2009.9.13 선고 2008누2554판결(확정))

사례 ④ 세은건설은 2019.3월부터 2019.12월까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를 영위하는 건설사업자(수급사업자)에게 3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중 총 68건의 세부내역을 추가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추가계약서 등 하도급법상 변경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음.

심결요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하도급계약 이후 공사 내용의 추가나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추가나 변경되는 공사의 착공 이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상 사전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

제재내용 【시정명령】

사례 5 대림산업은 2015.10.7부터 2017.12.27까지 3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및 건설 위탁 등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고 4일에서 388일이 지난 이후에 발급하였음.

또한 계약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또는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누락한 계약서면을 발급하였음.

심결요지 수급사업자들이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해당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4~388일 지연하여 발급한 행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해당함. 또한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 중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기일,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됨. (대림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2019.8.30. 2018건하1299)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7.35억원 부과
* 과징금은 선금금 지급의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등 위반행위가 포함된 금액임.

• Q&A

Q1 계약서 서면교부 시 적법한 시점은? 또한 긴급상황으로 인해 납품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소급적용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A1 서면(계약서)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를 하여야 하므로 납품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소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Q2 기본 계약서 교부하고 발주는 VAN(전산망)으로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A2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FAX, 기타 전기, 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법한 서면교부로 볼 수 있음.

Q3 거래 당사자 간 상이한 견해가 지속되어 계약갱신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계약서 서면 미교부에 대한 책임이 원사업자에 있는가?

A3 서면(계약서)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를 하여야 하므로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변경된 작업에 착수하기 전 갱신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 견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하지않고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Q4 전화로 주문하고 후일 주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은 문제가 되는가?

A4 전화 만에 의한 발주는 서면 미교부로 됨. 긴급하여 어찌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전화로 주문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는, '주문내용에 따라 바로 주문서를 교부할 것'이므로 그것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바로 주문서를 교부해야 함. 참고로 이메일을 통한 주문 등도 서면 미교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함.

Q5 가단가는 금지되는가?

A1 가단가를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가단가를 기재한 경우에 정식단가가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단가가 결정되지 못한 사유'와 '단가를 결정할 예정 기일'을 기재하여 단가가 결정된 후에는 바로 보충서면을 교부해야 함.

Q6 계약체결 후 제품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추가된 물량 또는 설계변경된 내용이 있었는데, 당사자 사이에 정산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서면 교부의무에 위반되는가?

A1 향후 추가된 물량 또는 설계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이에 서면 미발급으로 판단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임.

③ 선급금 지급의무(하도급법 제6조)

| 개념 |

- 하도급대금은 물품 등의 납품 또는 시공을 완료한 다음 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기성금이라고 함. 경우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 착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리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하도급법상 선급금이라 함.

| 원칙 |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함.
- 만약,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법정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시 어음할인료 지급

| 적용기준 |

- 선급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액 산정기준
 -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액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다만,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내역(용도, 지급대상 품목)을 지정하여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다음과 같이 하도급율을 감안한 선급금을 산정 지급

예 토목건축공사에 토공사, 철콘공사, 조경공사가 있을 경우,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토공사부문에 30%, 철콘공사부문에 20%를 선급금으로 지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원사업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각각 하도급계약 금액의 30%, 2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면 됨.

❖ 용도를 지정받지 않고 전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
관련된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그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

예 발주자가 용도 지정 없이 계약금액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관련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각각 하도급계약금액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지연 제출하여 원사업자가 선급금의 법정 지급일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기간(통보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은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할 수 있음.

*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지급기준 공정위 고시
[지연이율 연15.5%(2015.7.1~), 어음할인율 연 7.5%(2012.8.21~)]

업무상 유의사항

Do

- *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용도, 지급대상품목 등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됨. 이와는 반대로 발주자가 특정한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전체 대금 중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 계약서상 선급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 * 수급사업자가 선금금 지급 보증서를 지연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만큼 선금금 지연 지급이 가능함.
- * 수급사업자가 보증한도 부족 등으로 선금금 지급 보증서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선금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 *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경우 선금금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선금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 선금금 지급 시 어음만기일 유지의무나 현금결제비용 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Don't

- *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선금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됨.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금금을 수령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미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수령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미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 * 선금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비율보다 적은 비율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 선금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나 어음 할인료를 미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금금을 지급하였으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 *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선금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 하도급법상 선금금은 장차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기성률)에 맞추어 공제해 나가야 함. 따라서 원사업자가 선금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다음 기성에서 선금금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제하여서는 아니됨.

● **심결례**

사례 ① 상원종합건설(주)는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을 94일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현금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지급하는 한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 함.

심결요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선급금 지연지급 행위, 선급금 지급비율 미유지 행위,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로 하도급법 제2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공정위는 시정명령 조치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사례 ② (주)케이에이치피티는 2013년 1월 '3차 화학용품 및 암모니아 열교환기 제관 제작'을, 2013년 7월 '유지씨씨(Ugcc) 에틸렌 저장용기 제관 제작'을 수급사업자 A사에게 제조 위탁했다. 이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A사에 지급해야 할 선급금 3억 1,150만원을 '선급금 없음'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유로 법정 지급기일인 15일 내에 지급하지 않음.

심결요지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선급금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대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선급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주)케이에이치피티에 향후 금지명령과 임원 담당자에게 교육 이수명령을 결정 또한 선급금 지연이자 2,463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음.

제재내용 【시정명령】

• Q&A

Q1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다음 기성에서 선급금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는?

A1 하도급법상 선급금은 장래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성률에 맞추어 공제해 나가는 것이 원칙인 바, 선급금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Q2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의 부도로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는?

A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로 선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므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미지급 선급금에 대한 화의채권 귀속여부는 화의법상 문제로 별도 판단 필요함.

Q3 발주처로부터 전체 공사에 대한 선급금 20%를 수령하고, 이 중 일부 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한 결과, 발주처와 계약한 도급금액의 120%일 경우 선급금 지급은?

A3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하도급 금액에 발주자로부터의 선급금 수령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Q4 2023년 4월 10일에 발주자로부터 본사건물 신축공사를 100억원에 도급받아 2023년 5월 1일에 일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10억원에 건설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현금 10억원 선급금으로 수령하였다면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기일 및 지급금액은?

A4 ① **지급기일**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기 이전인 2023년 4월 10일이라면 건설위탁일인 2023년 5월 1일부터 15일 이내, 즉 2023년 5월 16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이후인 2023년 5월 10일이라면 2023년 5월 25일까지 선급금을 지급해야 함.

② **지급금액**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공사비의 일정률로 지급받았을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비의 10%를 선급금으로 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도 10%인 1억원을 지급해야 함.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용도 등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지정하였다면 그 지정내역별로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함.

④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하도급법 제9조)

| 원칙 |

① 검사기준의 결정방법

- 검사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될 경우, 목적물 완성 및 납품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준시점이 불명확해짐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하도급법에서는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이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 하에 제3의 공인기관 등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함.
- 여기서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하여야 함. 다만, 검사 기준의 객관성 공정성에 관한 판단은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음.

② 검사결과와 통지의무

· 통지기간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함. 여기서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며,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함.

· 통지의무의 예외

-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하거나 상당기간 경과 후에야 비로소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됨.

③ 검사비용문제

- 검사는 원사업자를 위한 것이므로 검사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검사 결과 통보 의무의 예외 |

①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무의 예외는 다음과 같음.

-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② 검사와 반품의 관계(대량 납품하는 경우)

- 대량으로 납품하는 경우 목적물의 전부를 검사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샘플 검사나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 납품받은 후 제품에 하자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함. 다만,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반품사유, 시기, 보상 문제 등)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것으로 봄.

■ 위반유형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와 연결되는 여러 가지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있는데, 먼저 검사기준과 방법에 관해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서면 미발급이 있음. 또한 검사기준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 감액, 대금 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있음. 따라서 원사업자는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실제로 이행하여 사전에 법 위반을 예방해야 함.

업무상 유의사항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음.
- 검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와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연장과 관련한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함.
- 당사자 간의 검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제3의 기관에게 검사를 맡기는 것도 가능함.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 법정검사기일(10일)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반품하거나 대금을 감액할 수 없음.
- 검사 결과 통보는 서면 통지가 원칙이며 구두통지는 법 위반임.

Do

- * 감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화시켜야 함.
- * 목적물 수령 후 수령증명서와 함께 검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Don't

- * 원사업자가 감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검사하지 않음
- *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목적물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지 않음
- * 감사기준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불합격 처리하지 않음
- * 통상 적용되는 검사기준보다 매우 엄격하게 정해서 통상적으로는 합격판정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불합격 처리하지 않음
- * 원사업자가 불량품의 발생을 예상하여 대금의 지급을 과다하게 유보하지 않음
- * 검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지 않음.
- * 법정검사기일 이후에는 반품이나 불량을 이유로 감액을 하지 않음.

• Q&A

Q1 지속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어 월 1회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월 1회로 정한 마감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고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의 검사결과를 해 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는?

A1 하도급대금 지급시에는 월 1회로 정한 마감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 있지만, 검사결과의 통보는 실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주어야 함.

Q2 건설위탁관계에서 공사를 목적으로 현장에 재료를 반입한 뒤, 인수증 및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목적물 수령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A2 목적물의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간주함.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목적으로 현장에 재료를 반입한 후 원사업자로부터 인수증 및 확인서를 받지 않았고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기 사실이 입증되면 하도급법에 의한 목적물의 수령으로 간주됨.

Q3 수급사업자가 기성으로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는 기성검사 증빙서류를 접수한 이후에 검사를 하여도 무방한지?

A3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Q4 건축물 준공 후 발주처와의 계약금액 미정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서면으로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

A4 건설 위탁의 경우 건축물이 준공되었을 때 수급사업자의 검사요청을 받는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임.

5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하도급법 제13조)

| 개념 |

① 원칙

-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 원칙적으로, 제조위탁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산정시 기준일이 됨. 여기서의 목적물 수령일이라 함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날(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에 두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을 의미함.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간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면 안 됨.

② 60일 이내 대금지급 원칙의 예외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함.
- 추가공사 및 공사중단, 계약해지 등으로 정산이 되지 않아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의 인수일은 정산시점에 불구하고 추가공사의 완료일, 공사중단일, 계약해지일 등을 목적물 인수일로 봄.

| 하도급대금 지급시기 |

-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

급해야함.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중 먼저 도래한 기간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 하도급대금 지급시기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유예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시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수령일 기준
 - 제조·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이며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
 -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
 -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

| 기간의 계산 |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에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봄.

> 어음 할인으로 또는 지연이자의 기산일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1일째되는 날임.

| 현금 결제비율 유지 적용기준 |

- 현금비율의 산정방법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 현금수량액/도급대금수량액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비율 :
현금지급액/하도급대금지급액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에는 당해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현금으로 인정되는 결제수단 : 현금, 수표

① 어음만기일 유지 적용기준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안 됨.

☞ 타인 발행의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지급기간은 원사업자의 어음을 교부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간주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② 현금결제비율 및 어음만기일 유지(법 제13조 제4항, 제5항)의 적용대상

- 1999년 4월 1일 이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적용
 - 하도급계약 체결시점 판단기준
 1. 제조위탁의 경우 기본계약이 아니라 발주서 등에 의한 개별계약 체결시점

2. 건설위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계약이 아니라 당초 하도급계약 체결시점
- 재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재하도급 관계에서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결제 받은 수급사업자(재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는 2차 하도급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결제비용 및 어음만기일 유지기준의 적용을 받음
 - 선급금 지급에서도 현금결제비용 및 어음만기일 유지기준의 적용을 받음

| 지연이자 지급 의무 |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해야 함.
- 예를 들어, 목적물을 수령하고 90일째 되는 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면 30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고시 지연이율 : 연 15.5% (2015. 7. 1~)

$$\text{지연이자} = \text{지연지급 하도급대금} \times \text{지연이율} \times \text{지연일수}/365\text{일}$$

|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7.5%)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에 30일 이 만기인 어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30일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함.

고시 지연이율 : 연 7.5% (2015. 10. 23~)

$$\text{어음할인료} = \text{어음지급액수} \times \text{할인율} \times \text{지연일수}/365\text{일}$$

| 어음 대체 결제수단의 수수료 지급 의무 |

- 어음 대체 결제수단은 하도급대금 지급시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결제수단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을 말함. 특히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 대체 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 해당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수수료율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사전에 체결한 수수료율을 적용함.

|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 |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은 현금 외에 어음 및 어음 대체 결제수단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음.

업무상 유의사항

Do

- *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일은 대금 지급 기일인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음.
- *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Don't

-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까지 하도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됨.
- *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결제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 원사업자가 월 1, 2회 납품받고도 마감제도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그 달 말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잡아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의 대금 청구 지연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의 하자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유보하여서는 아니됨.

Ⅰ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제13조의3) 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및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기되는 분쟁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자신의 회사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 당사는 POSCO기업집단 소속으로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업무 관련부서는 반드시 해당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대법원 판례」 (94누10320 등)

-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음.
- 즉 원사업자가 정산할 것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일단 하도급대금은 공사가 완료되어 목적물이 인수되면 지급하도록 하고, 그 밖의 채권채무관계는 별도의 해결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판결임.

● 심결례

사례 ① 포스코ICT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한국씨씨에스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브라질CSP 제철소 관련 전자기기, 배전반 등을 제조위탁하고, 2014년 6월 25일부터 2015년 11월 14일까지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53,918천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또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휴먼에어텍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건설·용역 위탁을 한 후, 2013년 9월 30일부터 2015년 5월 28일까지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1,907,669천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8,617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심결요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포스코ICT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됨.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도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 조치함.

제재내용 【시정명령】【과징금】

사례 ② 한화에스엔씨는 2건의 추가개발 용역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추가개발 용역은 본 계약인 '한국교직원 공제회 회원관리 차세대 시스템 구축 용역'과 연계된 것으로 000이 본 계약 구축 용역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용역수행을 중단하여 본 계약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계약과 연계되어 개발되는 이 사건 추가 개발 용역건도 용역수행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심결요지 ① 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추가개발 용역 건은 발주사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심인이 발주사로부터 추가개발에 따른 계약금액 50,798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피심인은 위 2건의 추가개발 용역을 위탁하기 위하여 000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본 계약 구축용역과는 별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000이 용역을 완료하고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양측의 담당자협의를 통해 000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있는 점.

③ 위 2건의 추가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서상에는 000의 목적물 납품에 따라 피심인이 검수완료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000이 납품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추가개발 용역' 건에 대한 검사내역기록을 보면 투입인력(김00, 김00)이 기재되어 있으며, 용역 완료여부에 'Y'라고 표시하여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인터페이스 추가개발 용역'건도 이 건의 개발일정 및 진척관리도를 보면, 2012.5.1. 개발을 시작하여 2012.5.24.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위 2건의 추가개발이 본 계약 용역과 연계된 개발이라 하더라도 OOO이 별건의 계약에 의하여 추가개발 용역수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OOO이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보고한 주간업무보고서(2013.2.13. 및 2013.3.6. 보고자료)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추가개발을 위하여 2명의 인력을 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따라서 한화에스엔씨는 목적물을 수령하고 검사까지 마쳤다면 본 계약 구축용역의 완성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72,600천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였음.

제재내용 【시정명령】

사례 ③ (주)삼호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방산-하중 간 도로 개설공사 중 토공사, 배수 구조물공사 및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주)한국토건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2003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인수한 목적물 관련 하도급대금 252억 6,034만원 중, 2억 6,174만원을 법정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연이자 4,738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그리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일부를 현금성 결제수단이 아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함.

심결요지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며,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일부를 현금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한 것은 제4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 징 금】 0.3억 부과

• Q&A

Q1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인수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가?

A1 하도급거래 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이므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함. 즉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의 대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Q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에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일수 30일 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A2 당사자 간 약정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실제 지급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경우에는 하도급상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단, 당사자 간의 약정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하도급 법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인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임.

Q3 Plant 제어 컴퓨터 시스템을 납품, 설치 완료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 중 대금 지급조건이 선금금 20%, 기성금 70%, 준공 완료 후 10%로 되어 있음을 들어 원사업자의 귀책사유(종합준공이 안되었음)로 시운전이 불가능함에도 15%의 공사대금을 6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수급사업자 보호책은?

A3 이 경우 준공의 성격이 단순히 납품, 시공으로 끝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양사가 계약을 통해 여타 공정의 공기지연도 예상하면서 모든 공정이 완료된 후 시운전이 완료되어야 준공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면 시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금을 유보하고 있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당초 계약에서 정한 준공금 10%

를 초과한 15%를 유보하고 있다면 그 초과분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음.

Q4 현금성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여부?

A4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였더라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임.

Q5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의 부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A5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분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책임을 부담하나, 지분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로 연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 다만, 하도급계약이 단독명의로 체결된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기명날인한 공동도급서만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상 의무를 부담.

Q6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예외조항으로 '대등한 지위에서의 약정'과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이 인정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A6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라 함은 회사의 외형규모인 자본금, 종업원수,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상호 대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업종의 특성에 따른 시장점유정도, 생산능력 및 기술수준, 제품 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으며, '당해업종의 특수성'이란

당시의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당해업종의 상관행 및 경제현상의 비정상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금지급 기일을 지킬 수 없을 경우라 하겠음. 상기 예외규정의 적용은 하도급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함.

Q7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청구서에 근거하여 지급 시, 수급사업자로부터 청구서가 제출되지 않아 대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하도급법상 지급지연인지?

A7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은 원사업자의 의무로서 수급사업자가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임.

⑥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의무(제13조의2)

| 개념 |

-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 제13조의2 제1항)
-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13조의2 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건설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 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 제13조의2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최초 장기계속건설하도급 계약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법 제13조의2 제3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건설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 건설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건설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최초의 장기계속 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 제13조2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최초 장기계속건설하도급 계약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법 제13조2 제3항)

-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건설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다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건설 하도급 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봄.

(법 제13조의2 제4항)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다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함.

(법 제13조의2 제5항)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 보증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보증약관상 필요한 청구서류를 갖추어 보증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법 제13조의2 제6항)

1. 원사업자가 당좌거래 또는 금융거래 정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2. 원사업자의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사 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원사업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등록 등이 취소·말소 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할 수 있음. (법 제 13조의2 제7항)
 -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13조의2 제9항)
 -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음.(법 제13조의2 제10항)

| 적용기준 |

-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교부하여야 함.
- 종전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승계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계 당시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여야 함.
-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정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단,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되지 않음.

| 하도급대금 보증금액 범위 |

-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선금금]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text{계약금액}-\text{선급금})/\text{공사기간}(\text{월수})]\times 4$$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text{계약금액}-\text{선급금})/\text{공사기간}(\text{월수})]\times \text{기성금 지급주기}(\text{월수})\times 2$$

Ⅰ 지급보증 의무면제 사유 Ⅰ

-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하도급 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위반유형

- 원사업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 원사업자가 자신은 보증서를 교부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으로 현금 예치하도록 하거나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의무를 면제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의 보증 의무 면제를 악용하여 하도급공사를 세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하도급법상 탈법행위)
- 원사업자가 자체 발주공사에서 당사자들 간 합의로 지급보증을 면제하는 경우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해 조건부로 합의한 상태(예 : 원사업자 부도시)에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는 그 증가분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

- 1건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정한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같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에 대해 별도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 적용요건 |

- 제조·건설위탁한 후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의 사유가 발생했어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 변동을 이유로 추가금액 받아야 함.
-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이어야 함.

● 심결례

사례 ① (주)신성엔지니어링은 수급사업자인 원광이앤지(주)에게 삼성SDI 전지동 증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음.

심결요지 원사업자는 원광이앤지(주)에게 건설위탁한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고 있고,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음. 또한, 자신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위반임.

제재내용 【시정명령】

• Q&A

- Q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합의하면 대금 지급보증 의무는 면제되는지?
- A1**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는 강행규정으로 상호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Q2** 공제조합의 지급보증 한도 초과로 지급보증이 불가능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급사업자도 직접지급을 원하는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지?
- A2** 하도급법상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합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다만 직접 지급에 관한 조건부 합의 등으로 발주자가 직접 지급의 의무가 조건부로 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음.
- Q3** 원사업자가 하도급 금액의 20%로 계약이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 A3**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이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법 취지상 계약이행보증금을 10% 초과하여 요구한 행위만으로 당연 위법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거래관행, 공사 성격, 수급사업자의 신용도 등을 종합하여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여부 판단 필요
- Q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에 공동도급한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하는지?

A4 《공동도급 분담 이행방식》

하도급계약이 개별 원사업자별로 이루어지고 공사이행도 분담되어 있으므로 개별 원사업자별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판단

《공동도급 공동 이행방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주체는 개별 원사업자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동수급체가 별도의 법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하도급계약상의 개별 원사업자별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여부를 판단

Q5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고 수급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는?

A5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위의 경우처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거래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는 없음. 그러나 건설산업 기본법 등에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원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7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제16조)

| 조정절차 |

① 조정내역 통지

- 원사업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해 하도급대금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해당 하도급대금 조정내역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함. 다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음.

② 변경계약 체결

- 그 다음으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과 관련된 변경계약을 해야 함. 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조정받은 내용을 반영해 주어야 함.

③ 조정금액 지급

-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 조정기준 |

① 분명한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

-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② 불분명한 추가금액의 내용

-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함.

③ 총액지급 방식

- 총액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 각각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증액시켜주는 경우에는 적법하나, 수급사업자 각각에 해당하는 비율 미만으로 증액시켜주는 경우에는 위법함.

| 조정방법 |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물가변동 대금조정 의 경우, 복잡한 개별품목의 조정방법보다는 전체 계약금액에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여 총액조정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다만, 품목별 조정방법의 경우 해당 공종별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세부공사 내역별로 조정받은 내용과 비율로 해야 함.

■ 위반유형

-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와 약정이나 국가계약법(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고 물가변동률이 5% 미만이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을 이유로 조정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함.
-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대금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동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수령 받고도 이를 미지급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수령하고도 15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거나 15일을 초과하여 현금을 지급할 경우

- 에는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에 해당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금액을 수령하고서도 15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어음으로 지급하거나同日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

■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은 시점 이전의 하도급계약 공사에 대하여 조정 기준시점 이후의 하도급 공기, 납기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준 경우
- 하도급계약 시점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일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 주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계약하면서 당해연도의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시점 이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다고 무조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님.

업무상 유의사항

Do

- * 설계변경 등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이 이루어져야 함.
- * 설계변경 또는 물가연동으로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조정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협의를 완료하고

조정절차를 마무리 하여야 함.

- * 협의 절차가 지연되어 30일이 초과되어 합의가 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대금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일수만큼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Don't

- * 설계변경 또는 물가연동에 따른 조정을 특약으로 배제하지 말아야 함.

● 심결례

사례 ① 에스케이건설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물가변동을 이유로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0. 11.25., 2011.10.6. 및 2011.12.8. 총 세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으므로,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0000(주) 등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각각 법정기한인 30일을 59일에서 437일 초과할 때까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였음.

심결요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을 증액받고도 0000 주식회사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지 않는 것은 법 제16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음.

제재내용 【시정명령】

• Q&A

Q1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방법 및 시기는?

A1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원도급계약 시점과 하도급계약시점이 다른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물가변동을 적용해 주는 기준시점이 하도급계약 시점보다 앞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해줄 필요가 없음. 또한 하도급계약 시점으로부터 물가변동 적용시점까지의 기간이 원도급계약에서 물가변동이 적용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시 그 만큼을 공제할 수 있음.

Q2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신발장, 씩크대 등을 제조위탁시, 위 시설물을 제작납품만 하고 원사업자가 설치한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의무가 있는지?

A2 하도급법상 물가변동분 반영 의무는 제조위탁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해당 위탁물을 제조하는데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면 발주자로부터 적용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함.

Q3 하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예정금액이 당해연도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금액임을 수급사업자가 인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기한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조정해 주어야 하는지?

A3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단,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계약하면서 당해 연도의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하여 입증되고,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해주지 않아도 됨.

Q4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단가를 조정함에 있어 기존의 공종에 대한 추가 시공 부분과 신규 공종 추가의 경우 조정기준은?

A4 · 기존 하도급단가가 있는 공종에 대한 추가 시공부분은 우선 당초의 하도급단가를 유사단가로 보고 도급단가의 등락률(설계변경에 따른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

· 기존 하도급계약 내역서에 없는 신규 공종부분은 발주처로부터 적용받은 단가를 기초로 하여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

Q5 전문건설업체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후 시공 중인 아래 공사계약의 위법성 여부는?

A5 · 하도급내역서에 공과잡비가 10% 적용되어 있으나 특기사항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시 5%만 적용한다'는 내용

· 견적내용 중 도급이 없는 공종은 차후 설계변경에 반영되더라도 기적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을 규정하고 특기사항으로 당해 연도에는 물가변동 대금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공과잡비를 받았다면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5% 제한은 위법임.

· 상기 특약사항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추가공사비를 지급해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전에 계약되었다면, 동 조정 기준시점 이전의 하도급계약 해당분에 대해서는 대금조정을 해주어야 함.

Q6 원사업자의 지시로 투입비와 간접비 5.8%를 지급받기로 하고 추가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을 증액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A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8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하도급법 제16조의 2)

|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 |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등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 공급원가 외의 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뿐만 아니라, 관리비 등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사업자는 별도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조정의무가 발생함
- 공사 저가수주에 따른 단순 적자보전 사항은 조정신청 대상이 아님.
 - ↳ 따라서 공급원가 변동에 아닌 다른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음

|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됨.
- 구체적인 조정 대금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함.

※ 분쟁조정협의제도

: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발생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Ⅰ

- 조정신청일부터 10일 경과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조정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Fast Track) 협의개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 ① 협의 중단의사를 밝힌 경우
 - ② 조정금액이 상호 간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
 - ③ 합의 지연 시 영업활동의 심각한 곤란 등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Ⅰ 조합의 공급원가 조정 협의 Ⅰ

* 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공급원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조합도 원사업자에게 조정신청 협의 가능함.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수급사업자가 조정신청에 따른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물량감소 등의 위험으로 인해 신청을 꺼려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도입(조합에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 부여)
 - 조합은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원사업자에게 조정 신청
 - 조합의 조정상태 원사업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매출액(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위반유형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 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 조정 관련 지시, 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에 임하지 않은 경우
- 단가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재고물량, 잔여 납품물량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시점을 지연하여 제시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성실히 조정 협의에 임하였다면 그 결과 수급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님.

업무상 유의사항

Do

- * 하도급 거래에서 원재료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되면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사전에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요청이 있으면, 조정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함.

Don't

-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됨.
- *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조정 관련 지시, 보고 등 간접적형태의 협의를 포함)에 임하지 않으면 안됨.
- *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여서는 안됨.
- * 수급사업자의 협상 요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안됨.

• Q&A

Q1 공급원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발주처로부터 원도급금액에 대한 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에 꼭 응해야만 하는 것인지?

A1 철근, 시멘트 등 건설 자재 가격 및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는 것이며,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 위법임.

다만,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 사유가 공급원가의 변동이 아닌 저가수주 등으로 인한 적자보전 등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협의 신청 내용 검토 결과 협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협의를 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7.2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하도급법 제4조)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1 개념 1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할 수 없음(법 제4조 제1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별점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하도급 3배 배상제에 해당 :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경우 원사업자는 공정위 처분에 더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 책임(법 제35조 제2항)
 - ↳ 배상액은 고의 여부, 수급사업자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취한 이득,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및 객관적 요건을 갖춰야 함. 두 요건은 상호보완적으로 부당성이 큰 경우에는 가격기준을 낮추어서, 부당성이 적은 경우에는 가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게 됨
- 주관적 요건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
 - 원사업자의 강요에 의한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 원사업자가 기망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가격결정에 관한 판단을 방해하는 경우 등
- 객관적 요건 :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 '통상 지급되는 대가'란 당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거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

단, 신규 개발품의 경우는 해당 목적물 등의 제조원가 + 해당 원사업자가 거래 중에 있는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 이익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대가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라고 봄.

- '낮은 가격'이란 시장 평균가격과의 괴리정도, 원재료 등의 가격동향, 당해 하도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취하게 되는 이익의 정도, 단가결정 방법의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위반유형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 (법 제4조 제2항 제1호)
 - 일률적 단가인하는 제조하도급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행위 중 하나임. 그러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인지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② 협조 요청 등을 통한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금액 할당(법 제4조 제2항 제2호)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 등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그 금액만큼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임.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취급(법 제4조 제2항 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함. 여기서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생산능력, 작업의 난이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운송거리, 납기, 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 거래기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존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함.

㉔ 거래 조건의 착오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법 제4조 제2항 제4호)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임.
- 만약,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협상 과정에서 종전 계약보다 발주량이 늘어날 것처럼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위법함.

㉕ 일반적으로 낮은 단가(법 제4조 제2항 제5호)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및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합의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해야함.

㉖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법 제4조 제2항 제6호)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임. 여기서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에는 재료비, 직접 노무비, 경비(재료비 및 노무비 이외의 제자원가 요소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를 말함, 다만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 등이 포함됨.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사현장의 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㉗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법 제4조 제2항 제7호)

- 만약, 원사업자가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최저가 낙찰자와 낙찰금액이 확정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로 협상을 한 경우, 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법 제4조 제2항 제8호)

-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있음.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는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게 된 사정이 원사업자나 외부환경의 변화 등 (예를 들면 경영적자, 임금인상이나 노조파업, 판매부진, 경쟁심화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나 환율변동 등)에 있고, 수급사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말함.

경쟁 입찰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 먼저, 최저 입찰금액이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 한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하여 입찰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주어야 함. 이때의 입찰예정가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함. 실제로 입찰 결과, 실행예산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함.
- 또한, 사전 고지를 하였다라도 예정가격에 대한 공증을 받는 등 사후에라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이의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외에도 낙찰자를 선정한 후 일방적으로 낙찰자를 변경하는 행위 역시 주의해야 함.

업무상 유의사항

Do

- * 수급사업자들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거래 규모, 경영상황, 작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단가를 조정해야 함.
- * 경쟁입찰로 계약의 당사자를 선정할 경우, 최저 입찰가가 예정가를 초과하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자와 추가 협상을 통해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됨.
- * 예정가격을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예정가격이 미리 정하여져 있음을 회사 내부 자료로 남기거나 공증을 통해 추후 예정가격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 예정가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 * 최저 입찰금액이 당사의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 한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해야하고 예정가격을 사전에 확정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음.
- * 공증을 받기 어렵다면(비용, 절차상의 번거로움) 사전에 예정가격이 확정되어 있었음을 회사의 기안 문서에 남겨놓아야 함.
- *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수급사업자와 협의한 문건은 보관하여야 함.
- * 연료비 상승이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요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Don't

- * '경영상의 위기'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낮은 단가 설정을 요구한 경우, 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낮은 단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함.
- * 자재(원부자재 포함)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 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 수급 사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속이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함.
- * 어떠한 명목으로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함.
-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 *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同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건설 등을 위탁한 후 견적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 * 경쟁입찰 또는 부대입찰의 경우 당초 낙찰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 금액을 부당하게 결정하지 말아야 함.
- * 수의계약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 내역서상 직접공사비 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 **심결례**

사례 ① 케이티씨건설은 신고인으로부터만 견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한 후 2012. 10. 5 신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에 해당하며, 자신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96,221천원이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

심결요지 신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심인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 위반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차액지급 명령 포함
【과 징 금】 0.16억원 부과

사례 ② (주)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 관련하여 34개 수급사업자와 2017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인 비율(3~5%)로 단가를 인하하여 총 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인함.

심결요지 조선 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의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세진중공업의 대금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 징 금】 8.97억원 부과

사례 ③ 현대엔지니어링은 2006년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도장 Shelter 신축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등 4개 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중 예가 내 최저금액 입찰업체를 낙찰예정업체로 결정한다'고 현장설명을 한 후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예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가 입찰금액이 피심인의 예가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

심결요지 피심인(현대엔지니어링)은 사전에 재입찰을 고지하였고, 예가기준을 초과한 최저 견적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한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피심인이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 관리 규정에 '입찰 실시 전에 예가를 확정하여 밀봉하여 보관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건과 관련하여 예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이 예정가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재협상을 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제재내용 【시정명령】

• Q&A

Q1 정부발주 공사시 저가 하도급 심사의 대상이 되면 하도급법상 문제가 되는가?

A1 하도급법의 규정은 수의계약 시에는 직접공사비 이하, 경쟁입찰 시에는 최저가 투찰금액에 대한 추가 인하협상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도급에 대비하여 하도급대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즉,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하도급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에서 '통상적 지급되는 대가' 이하인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하여야 함.

Q2 원가절감 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당초보다 낮게 계약한 경우에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되는가?

A2 합리적인 원가절감요인을 제시하여야 하며, 일률적으로 할당된 원가절감 목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여질 수 있음. 통상 장기적인 제조 납품의 경우 거래 초년도보다 이후에 원가절감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Q3 경쟁입찰 시 하도급대금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A3 최저가 금액이 실행예산보다 초과함을 이유로 협상을 통해 최저가 금액보다 낮게 체결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찰 후 재입찰을 실시함이 타당함.

Q4 물량을 5배 이상 많이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를 기준으로 추가 공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도 무관한지 여부는?

A4 하도급단가는 그 물량의 대·소에 따라 단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물량이 5배 되는 타사업자의 단가기준으로 계약변경 강요시 위반소지 있음.

Q5 자재발주를 위한 사양설명 시 100톤이 필요하나, 공정에 따라 감소나 증가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실제 80톤만 필요하여 입고 후 대금 지급할 경우, 업체에서는 100톤을 생산하였으니 사주어야 한다고 했을 때 공정거래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A5 원칙적으로 수량과 단가를 사전에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하도급거래일 경우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어 법 적용가능. 즉, 자재의 생산시기, 납품주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공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탄력적으로 납품이 가능하다면, 증감의 폭에 따라 단가는 달리 적용하는 슬라이딩 단가결정 시스템. 즉, 납품량에 따라 단가를 달리 결정하는 것이 분쟁가능성을 최소화 가능 (예, 100~120톤은 단가 1,000원, 99~80톤은 1,100원).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이 아닌 단순구매인 경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의한 불이익 제공행위 적용도 검토 가능

②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제11조)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개념 |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음. (법 제11조 제1항)
- 당초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적법함.

→ 부당감액의 경우,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벌점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감액의 정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하도급대금 감액시 감액사유와 기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함.(법 제1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조의2)
- 공정위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표준서식 보급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하도급법 →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별지3)

| 감액의 정당성 판단기준 |

-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

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그러나 감액은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만약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판단됨.

■ 위반유형

① 소급단가 적용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단가인하에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목적물에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였음. 이것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임.

② 원사업자의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의 발주취소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해당됨.

③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을 이유로 감액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임.

④ 원사업자의 손해발생에 영향이 없는 수급사업자의 과오

- A사는 B사에게 조립용 부품을 제조 위탁하였음. 이후 B사는 A사의 검사에서 합격된 조립용 부품을 A사의 보관 창고로 운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포장지의 일부가 훼손되었다. A사는 포장지 훼손으로 손해가 발생 했다면 납품 대금의 30%를 감액하였음.

이와 같이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는 감액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⑤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 위탁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사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임. 즉,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도록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면서 적정한 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임.

⑥ 납품시점에 떨어진 물가나 자재가격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도 부당감액임.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⑦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봄.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는 원사업자의 경영실책이나 가격경쟁력 상실 등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실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이 감액이유 및 방법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⑧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

- 관계법령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그 밖의 경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도 부당감액에 해당됨.

업무상 유의사항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미리 교부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때 발급하는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함.
 - 감액사유와 기준
 - 감액금액
 - 공제 등 감액방법
 -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사항 등
- 감액 시 공정위가 정한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함.
- 견적시 수량 없이 단가만 먼저 확정된 후, 발주시 소량 발주하는 경우는 발주 이후에 단가를 인하한 것이므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봄.
- 합의의 진정성(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 여부)이 필요함.
 -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른 것인지 판단기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 가능성,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원사업자가 대금감액을 요구한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대금감액의 경위, 대금감액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함.(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다534578판결)

Do

- * 수급사업자의 소홀한 장비관리로 인한 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정당한 감액에 해당됨.
-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후 하도급대금 산정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원사업자가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 *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납품하는 경우에는 해당목적물을 반품하면서 해당 금액만큼 감액할 수 있음.
- * 수급사업자가 불량품을 납품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의 금액만큼 감액이 가능함.
- *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내역과 실제 시공한 공사내역에 차이가 있어 실제 시공 내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대, 가불금, 장비임차료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된 지체상금 규정에 따라 감액이 가능함.
- * 감액을 하기 전 감액사유와 기준 등이 기재된 감액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발급하여야 함.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최종 정산에 합의하여 감액하는 경우

Don't

- * 수급사업자와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위탁이 완료된 목적물에까지 인하된 새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됨.
- * 고객사의 발주최소,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 또는 당사의 경영적자 또는 납품가격 인하 등을 이유로 감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됨.
- *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품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 * 하도급계약 후 추가 위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원 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

- * 계속적인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경우
- *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
-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감액하는 경우
- * 목적물을 저가로 수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달리 감액하는 경우
-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심결례

사례 ① (주)포스텍은 2012년 4월 경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사업자에게 10%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함. 이와 관련된 5개 수급사업자가 그 작업의 내용, 거래 규모, 기존 작업 단가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주)포스텍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하도급 단가를 인하함. 또한 (주)포스텍은 2011년 1월경 발주자로부터 단가 조정 요청을 받자, B사를 포함한 9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작업을 완료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함(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7,900만원을 회수함).

심결요지 이러한 행위는 (주)포스텍과 발주자 간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로 판단하고,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와 부당감액 행위에 1억 3,500만원 지급명령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 징 금】 3,900만원

사례 ② STX조선해양은 통상적으로 선박블록 임가공에 대해 M/H 단가를 부과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수급사업자에게 이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내부기준에 따름. 해당 계약은 이러한 M/H가 기재되지 않고 총액만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조선경기 불황, 수주부진 등의 이유로 일률적으로 선행타재는 25%, 타재는 30%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여 결정

심결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계약에서 단가를 인하함에 있어 그 하락요인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5,100만원

사례 ③ 진성이엔지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영진테크에게 자동차 부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①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② 생산성이 낮은 자신의 생산라인 운영 요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였으며, ③ 자신의 납품처 위치 변경에 따른 물류비 증가분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6,500천원을 감액하였음.

심결요지 중소기업청장은, 진성이엔지의 부당한 위탁취소 및 감액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약 197,000천원의 피해를 입었고, 진성이엔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가 100%인 상황에서 부당한 위탁취소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어 결국 폐업까지 이르게 되는 등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고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였고, 이를 공정위는 받아들였음.

제재내용 【시정명령】

사례 ④ 삼성전자는 2003년 4월 휴대폰 단종,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6개의 수급사업자로부터 기납품 받은 납품물량을 폐기처리하였음. 그 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할 하도급대금 중 폐기처리된 물량에 대한 대금을 공제하고 지급

심결요지 휴대폰 단종, 설계변경 등이 사유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폐기처리된 물량에 대한 대금을 공제한 행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로 판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 징 금】 115억원
* 과징금은 서면 지연교부,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등 다수 행위 포함된 금액

사례 ⑤ 동호건설산업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인수한 목적물의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대금의 10%인 1천만원을 다시 돌려 받음.

심결요지 동호건설산업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에서 100% 현금지급을 대금지급방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면서 현금지급을 이유로 대금10%를 돌려 받았으므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행위로 판단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사례 ⑥ 동하정밀(주)는 2016. 9. 30. ~ 2019. 6. 30.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출하 검사에서 불량격품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348백만원을 감액하고 2018. 6. 30. ~ 2019. 1. 31. 기간 동안 클레임 비용 공제 명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0백만원을 감액함.

심결요지 공정위는 동하정밀(주)가 메모리 케이스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로 판단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3억 2,900만원

• Q&A

Q1 처음에는 계약 수량과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상황변화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수량을 감축하는 합의를 한 경우, 단가인상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가?

A1 고정비 감소 등 계약 수량과 단가의 상관관계가 인정되고, 수량 감축에 따라 비용 등이 증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은 '단가와 수량에 의해 하도급대금 확정 후 수량을 감축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단가인상 등 보전을 해주지 아니하는 행위'를 법 위반 행위로 예시하고 있음.

Q2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낮게 도급공사를 수주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야 하는데 가능한가?

A2 당초 예상보다 저가 수주를 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감액에 해당됨. 원가절감, 협찬금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에서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에 해당

Q3 물량이 증가하였는데 당초 하도급계약에서 대금 변동은 없는 것으로 특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A3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당초 계약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단가를 적용하여 대금을 증액시켜주는 것이 타당함.

Q4 당초 입찰시 교부하였던 사양 조건이 변경되어 하도급계약 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변경계약 체결로 가능한 것이 아닌지?

A4 계약의 주요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작업 변경 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임. 또한 하도급계약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대비 감액이 될때는 사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도 발급해 주어야 함.

Q5 계약 중 설계변경으로 감액되는 경우와 당초 물량 정산을 하기로 하고 정산시 감액하는 경우의 각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A5 도급계약이 먼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6조에 의거하여 15일 이내 변경 내역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 도급 계약 변경 없이 물량 감소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감액시 서면발급 의무가 발생하여 정산협의 전 감액되는 물량과 감액방법,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

Q6 축로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계약서상 물량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실제 축로물량과는 차이가 있음), 당사가 하도급계약을 근거로 수급사업자에게는 실제 축로한 물량으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였을 경우 부당감액에 해당 되는지 여부?

A6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라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라면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의거 하도급사업자에

게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함.

그러나, 물량증가, 단가증액 등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성격이 아닌 하도급 계약 자체를 당초 사후정산 물량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정산하는 것 자체는 위 하도급법 제16조와 무관할 것이며,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사항도 아님.

Q7 환율, 소재 등 가격변경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고 이후 정산하여 단가 소급하는 것이 부당감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A7 원칙적으로 금지됨. 단, 법 위반여부는 단가감액과 증액이 동등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객관적 기준 여부,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검토 가능함.

Q8 발주 후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하도급대금에서 하락분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는지?

A8 수급사업자의 다른 귀책사유 없이 원자재가격 하락을 이유로 감액하는 것은 부당감액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Q9 환차손을 이유로 대금 결제수단(원화 및 달러화)을 임의로 변경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에 대한 법 적용은?

A9 계약기간 중 이미 납품 완료된 물량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제수단 임의변경은 부당함. 단,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신규 납품분부터 결제수단을 원화 또는 달러화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4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하도급법 제8조)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개념 |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안됨.(법 제8조 제1항)
-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을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검사 완료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함.(법 제8조 제2항)
-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함. 다만, 이전에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간주 (법 제8조 제3항)

| 적용기준 |

• 원사업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①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을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파산, 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 수급사업자가 임의로 공정, 공법을 변경하여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된 목적물의 제조 및 건설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기간내 제조 및 건설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 후 위탁을 취소한 경우

■ 위반유형

① 부당한 위탁취소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함.
또한,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도 포함됨. 여기서 위탁한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에는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함.
 -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위탁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당초에 위탁 내용과 다른 작업을 시키는 경우
 - 목적물 등의 수령 후 추가적으로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
- 위탁 취소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함.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함.
- 공정위는 위탁 취소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합의의 진정성(절차 및 내용)을 검토하여, 진정성이 없는 경우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봄.

② 부당한 수령거부

-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에 두게 되는 것으로 검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취하는 행위를 말함. 다만, 목적물을 이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하는 때는 수령한 때로 봄.

- 부당한 수령거부는 납기일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부당한 수령거부의 판단기준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수령을 거부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수령거부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수령거부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이행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업무상 유의사항

Do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3배)의 대상이 됨.
- * 발주취소를 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함.
- *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 정해진 납기를 현저히 초과하여 지연 납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작업장에서 검사한 결과 기준에 상당히 미달된 하자품인 경우
 - 발주서 및 시방서와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등
- *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위탁취소와 관련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

- * 발주취소 사유가 사전에 서면의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고지되어야 함.
- * 발주취소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투입된 비용이 있다면 정산하고, 정산 합의를 작성하여야 함.

Don't

- *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작업을 중단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작업 중단 전에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대신하도록 하였고, 작업 중단에 대해 시정요구 및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 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는데도 시공능력 부실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막연한 이유로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서는 아니됨.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 발주자의 위탁취소 및 위탁 중단 등의 이유로 이미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 이미 수령하여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판매가 부진하자 새로 위탁한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가 선행 작업의 납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후행 작업의 위탁계약을 취소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급자재를 상당 기간 지연하여 공급한 사실로 인해 납기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여서는 아니됨.
-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기를 연기 통보하여서는 아니됨.
- * 위탁 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 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 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는데도 시공능력부실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막연한 이유로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서는 아니됨.
-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않고는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률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원사업자가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관장소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수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심결례**

사례 ①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42개 사의 협력사에 제조위탁한 선박부품 6,161건을 임의로 취소 및 변경하였음

심결요지 삼성중공업은 위탁 변경 시스템(이하 PCR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게 위탁취소 및 변경 등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계될 손실 등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음. 또한, PCR시스템에는 위탁 취소 및 변경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협력사들은 이유를 모른채 동의 여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36억원 및 법인 고발

사례 ② 씨제이대한통운(주)는 2014년 4월 4일 수급사업자와 500톤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 운송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자와의 용역계약 해제를 이유로 2014년 6월 13일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하였음.

심결요지 공정위는 용역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자와의 계약 해제를 사유로 용역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 취소의 금지 등)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의결 제2015-304호, 2014서 제3288)
→ 부당 취소는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의 근거가 마련되었음.

제재내용 【시정명령】

사례 ③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사외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총 11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했음. 대우조선해양은 설계 변경·선주 요구 등으로 위탁한 품목이 필요 없거나 수량이 줄어들게 되면 해당 품목의 발주를 취소·변경했음. 대우조선해양은 위탁 변경 시스템(이하 조달 협업 시스템)을 통해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위탁 취소·변경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음.

심결요지 협의 없이 위탁 취소 등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당위탁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 징 금】 153억원
* 과징금은 사전 서면미발급, 부당위탁취소도 포함된 금액

사례 ④ (유)한흥건설은 공군에서 발주한 '태풍피해공사' 중 '시설물 유지관리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보완 대책 미제출, 공사 준비 미흡, 공사 관련 업체에 외상대금 미지급으로 자재 설비 공급 거부, 공사부진으로 준공기한 내 준공 불가능 등의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음.

심결요지 확인 결과 수급사업자는 지정 기일 내 공사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 재개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고 기상 악화로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공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공사 지연은 발주자의 착공 연기 요청 및 원사업자의 선행공사 지연, 기상악화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지연의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었다. (유)한흥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내용 【시정명령】

• Q&A

Q1 건설공사 및 일반자재공급을 하는 중소기업체가 자재납품과 관련하여 당사의 기업윤리를 위반하여 자재납품 계약을 해지하였고 또한 현재 계약기간 중인 하도급 건설공사 계약을 해약하였다면 하도급법상 부당 위탁 취소 및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A1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사실상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임.

그러나 기업윤리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계약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당해 기업윤리를 위반한 자재납품에 한하여 계약해지는 정당할 것이나 전혀 무관한 건설분야까지 해지하는 것은 기업윤리 규정을 너무 자의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함. 단, 계약해지 시에도 기납품분에 대하여는 대금정산이 수반되어야 함.

Q2 하도급공사를 타절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는?

A2 계약내용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하도급계약을 타절하는 것은 법 위반 가능. 단, 수급사업자와 확정된 기성분에 대하여 대금 지급하고 미시공분에 대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후 정산절차를 정하여 타절하는 것은 가능함.

Q3 공법 변경 시 발주취소 및 계약해지 가능 여부는?

A3 공법 변경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계약을 일방 취소한다면 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음.

4 부당반품 금지(하도급 제10조)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개념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함.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치 아니 함.(법 제10조 제1항)

【 부당한 위탁취소 vs 부당한 수령거부 vs 부당반품 】

부당한 위탁취소는 납품 전, 수령거부는 납품하는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함. 반면, 부당반품은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임.



■ 위반유형

① 불명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근거한 반품

- 검사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않거나 정하긴 하였으나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방적으로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정·타당하지 않은 검사기준 및 방법을 사용하여 목적물 등을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반품하는 경우 부당반품이라고 볼 수 있음.

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대로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품하는 것을 말함.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발주중단 또는 클레임
-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 사양변경, 모델단종, 판매부진 재고 증가, 보관 장소 부족
- 소비위축 경제상황 변동 등

㉕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 검사 결과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이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보다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 부자재, 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 불량 때문 인데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는 부당한 반품에 해당됨.

㉖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

- 만일 원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부자재, 건축자재 등을 지연하여 공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경우 부당 반품에 해당됨.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㉗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는 부당한 반품에 해당됨.

㉘ 납기지연을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을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는 부당반품에 해당됨.

㉠ 하자에 대한 책임

-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할 경우 부당한 반품에 해당됨.

업무상 유의사항

Do

- *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반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3배)의 대상이 됨.
- * 반품 사유를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설정하여야 함.
- * 클레임약정서는 사전에 교부되어야 함.
- * 사전에 서로 약정된 계약 규정대로 반품을 하되, 반드시 검사결과를 같이 통보하여야 함.

Don't

- * 검사 기준 및 방법이 불명확한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이를 반품하여서는 아니됨.
-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당사가 공급한 자재 등의 품질불량 또는 공급지연 등을 이유로 반품하여서는 아니됨.
- * 발주취소를 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함.

-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 공정지연을 이유로 반품하여서는 아니됨.

이것만은!

☞ 무검사 합격 후 반품처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스코PS테크 OO프로입니다. 이번에 납품된 OO제품에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지난번 제품 테스트 때는 시간도 없고 해서, 무검사로 진행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제품 이상은 이상이니까 남은 재고 전량을 반품해야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하도급법 제10조 「부당 반품의 금지」에 따라 제품을 무검사 수령한 것은 합격처리 한 것으로 간주되며, 원칙적으로 반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심결례

사례 ① 인탑스는 사출물을 두 차례 납품받은 후, 납품받은 날부터 2~6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발주하였다는 이유로 반품하였음. 인탑스 직원의 실수로 인한 과잉 발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반품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과잉 발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출물을 납품받은 후 검사결과를 통보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출물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반품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결요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고 그 만 큼을 감액한 하도급대금 합계 1,844,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감액한 날(2008. 12. 30.)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연리 25%의 이율 적용)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사례 ② (주)에스디케스텍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유압기 부품을 수령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부터 2013년 12월 기간 중 발주자의 가공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400만원 상당의 유압기 부품을 반품하였음.

심결요지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

제재내용 【시정명령】

5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하도급법 제12조의3)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개념 |

■ 기술자료의 정의

-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 요건

① 비밀 관리성

-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②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작업공정도, 작업지시서, 기계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방법,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임상시험 방법 등

③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경제적 유용성)
-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설계도면, 생산원가 내역서 등)

| 영업비밀과의 비교 |

기술자료(하도급법)	구분	영업비밀(부경법)
要	비밀관리성	要
要	경제적 유용성	要
不要	비공지성	要

공정위 심결례 기술자료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과는 달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함”이라는 “비공지성” 요건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가 피심인에게 제공한 정보 또는 자료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공지의 정보 또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

| 기술자료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의 개념 |

- **기술자료 제공 요구**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게시, 물리적 접근 허용(전자파일 접속, 열람 허용),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함.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함. 다만,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음.
-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 **기술자료의 유용**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함.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 뿐만 아니라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됨.
- **기술자료 유용의 위법성**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사전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시한 기술자료의 사용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를 위주로 판단하게 됨.

- 기술유통의 경우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록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Ⅰ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Ⅰ

- 원칙적으로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금지되나,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원칙적 불허, 예외적 허용

- 나아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추가요건 부과 → 현실적으로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극히 어려움.

※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 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계도면 등과 같은 기술자료의 소유권 —切를 당사에 귀속시키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고, 그와 관련된 보상차원의 대가 지급을 명시하여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공정위 심사지침 상 정당한 사유의 예시	정당성 인정 여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과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과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요구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 요구해야 함.

■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서면 기재 사항

- ①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 ②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③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④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⑤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⑥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공정위 기술자료 제공 요구 표준서식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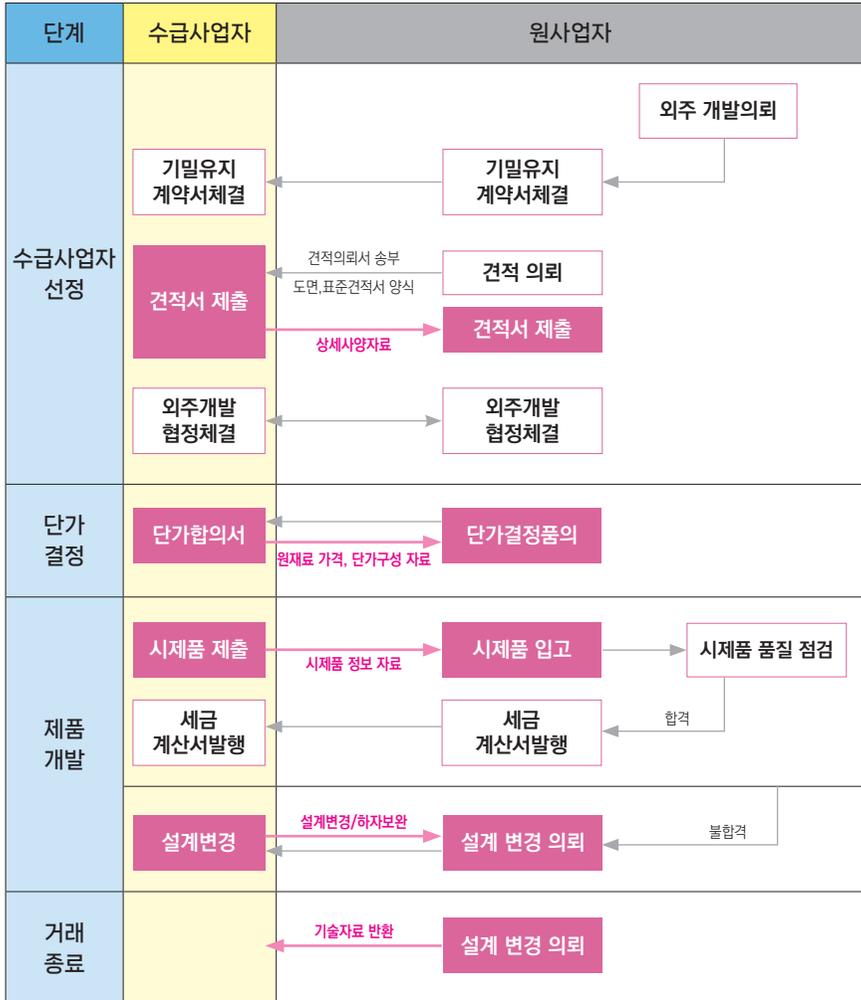
■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
-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
- 기술자료 미제공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로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

■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과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Ⅰ 거래단계별 기술자료 제공 현황 Ⅰ



|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

- 취득한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이나 사용범위를 벗어나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법 제35조 제2항)

↳ 배상액은 고의 여부, 수급사업자 피해규모, 원사업자가 취한이득,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조사시효는 7년. 서류의 보존기간도 7년으로 규정

* 일반적인 조사대상은 하도급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 |

① 거래이전 단계

-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경우

② 거래단계

-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공법을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 출원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자신과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③ 거래이후 단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법 제35조 제2항)
- 배상액은 고의 여부, 수급사업자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취한 이득,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위반유형

① 기술자료제공 강요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제안서 등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재료 가격, 납품단가 구성내역, 원가 등이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과 재계약시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하는 경우

② 취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 관련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아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그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가격의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 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 출원하는 경우

③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을 요청하면서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법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유의사항

Do

【 기술자료 요구 】

- *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기술자료 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함.
- *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그 약정에 따라 기술자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 기술자료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교부조건이 발생한 경우
- * 공동 기술개발약정 체결 후 그에 따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 공동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출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 * 납품 제품의 하자 발생 원인 규명, 불량 예방 등 공동의 품질관리를 위해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 * 공동기술 개발 참여 여부, 신제품 또는 신기술 적용 여부, 거래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능력의 평가 또는 부품 승인 등에 필요하여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한 서면을 작성한 후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 수의계약시 또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지명입찰을 통한 위탁 계약시 아직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주문품의 기준가격을 마련하기 위해 개략적인 원가 내역이 포함된 견적서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 *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라 납품단가 인상요청을 받은 후 인상 폭 결정을 위해 해당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 * 수급사업자의 요청으로 당사의 기술전수 또는 지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경영지도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유용】

- * 공동개발 기술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기여도를 반영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자료를 사용한 경우

Don't

【기술자료 요구】

- * 기술자료를 요청하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 구두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재료 가격, 납품단가 구성내역 원가 등이 포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 재계약시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유도하는 경우

- * 기술자료 요구시 기술자료 내역,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인도일 및 인도방법 등을 서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 정당한 대가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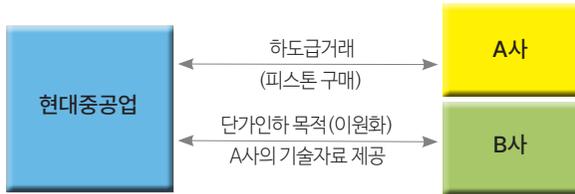
【기술자료 유용】

- * 기술이전 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상용화 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기술을 공여한 경우
- * 기술력을 심사한다는 목적으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당사의 기존 거래처나 관계사 등에 기술자료를 제공하여 동일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여 제품을 납품 받은 경우
- *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 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 받아 다른 경쟁 사업자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납품 단가의 인하를 요구한 경우
- *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 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그 핵심기술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선출원하는 경우

- * 공정위는 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기술자료 인정요건을 완화하였으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되는' → '비밀로 관리되는') 규제 범위를 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위까지로 확대하였음

● 심결례

사례 ① 현대중공업은 20여 년간 핵심 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온 글로벌 강소 하도급 업체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사 비용 절감을 위하여 해당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게 제공하여 피스톤 생산을 이원화하고 단가를 인하한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음.



※ 피스톤 공급 이원화 이후, A사와의 거래를 단절함

심결요지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였고, 요구과정에서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으며,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하도급법에 위반됨.

-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 요구 행위
 - 제품 제작 시 작업조건, 작업도, 작업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
 - 가공이나 조립 시 제품과 공구의 작업위치를 지시,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구인 지그가 작업과정에서 배치되는 형상과 관리공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
 - A사에게 4M* 관련보고서, 검사성적서, 관리계획서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
- * 제품 생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재료·부품, 공정(Man, Machine, Material, Method)

제재내용 【과징금】 9억 7,000만원 부과

사례 ② 볼보그룹코리아(주)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굴삭기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음.

심결요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하는데, 볼보그룹코리아(주)는 이러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임.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 징 금】 2,000만원

사례 ③ 엘지화학은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배터리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자신의 해외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 내에 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라벨을 제조하는데 활용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였음.

심결요지 엘지화학은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취득한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취득한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으로 하여금 라벨을 생산하도록 함에 따라, 중국 남경법인과 거래중이던 수급사업자는 거래가 중단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는 등 피심인의 기술자료 사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음.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 징 금】 5,000만원

사례 ④ 엘에스엠트론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그 제조 방법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의없이 자신 단독명

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하고 수급사업자에게 2건의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였으며, 동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연구 노트를 요구하면서 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음.

심결요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라도 반드시 서면방식을 취해야 함.

제재내용 【시정명령】【과 징 금】13억 8,600만원

사례 ⑤ 굴삭기 국내 1위 제조사인 D사는 굴삭기에 부착되는 에어 컴프레셔와 냉각수 저장탱크 구매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부품 공급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 A의 기술자료를 새로운 공급처가 될 업체에게 전달하여 부품을 개발하는데 활용함.

심결요지

- ‘제작도면’이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부 반출시 대표이사의 승인 필요, 직원들에게 해당 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 부과 등을 고려하면 비밀유지된 것으로 인정됨.
- 도면 등 자료만으로도 에어 컴프레셔 제작이 가능
- 다른 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사용할 경우, 에어 컴프레셔 기술개발, 시간, 노력, 비용을 상당히 단축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에 해당함.

이 사안에서 D사는 기술자료요구에 정당한 사유도 찾을 수 없고, 이를 부당하게 유용하여 A사의 사업 활동이 곤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하도급 위반에 해당. (공정위 심결 제2018-339호)

제재내용 【시정명령】【과 징 금】3억 7,900만원

• Q&A

Q1 계약을 체결하면서 또는 계약 중 수급사업자에 대해 원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되는가?

A1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심사지침]은 '생산원가 내역서'를 '기술자료'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가 존재함을 유의해야 함..

⑥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하도급법 제5조)

| 개념 |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됨.

| 적용기준 |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위탁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 제조, 수리시공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경우
- 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요구가 합리적이고 구속력 있는 요구이어야 함.

■ 위반유형

- 공사현장에서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수급사업자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원사업자가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계약당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제조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이라고 주장하며, 원사업자가 고가의 부품 구매를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매처의 지정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 제조 또는 시공 의뢰시 특정 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위탁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을 위하여 특정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이것만은!

※ 계열회사 등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스코PS테크 OO프로입니다. OO구매 건과 관련해서 기왕이면 당사 계열회사인 OO사의 제품을 사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었는지요? 물론 그렇지만, 뭐 꼭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 목적물에 대한 품질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 역무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5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 Q&A

Q1 원사업자가 계약 당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건설위탁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건설자재라는 이유로 고가의 자재구매를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할 경우 물품구매 강제행위에 해당하는지?

A1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발주자의 요구) 물품구매 강제행위로는 볼 수 없으나, 계약 당시 고가의 자재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이로 인해 하도급대금도 낮게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고가의 자재사용에 따른 차액만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할 것임.

Q2 수급사업자 B는 원사업자 A로부터 공사를 1억원에 수주받으면서 하도급 공사에 필요한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A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받았음. B는 물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1회 기성금으로 2천만원을 청구하였고 A도 승인하였는 바, A가 승인한 2천만원에서 A가 제공한 물품대금 전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만을 B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A의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인지?

A2 A가 B에게 물품을 구매하게 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A의 행위는 하도급법상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규정 위반임. 또한 A가 기성금 지급시 물품대금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만 지급한 것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행위로 하도급법 제12조 위반임.

Q3 전기기계 제조업자인 원사업자가 전기제품의 부품의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 구매담당자를 통해 자사상품의 판촉에 협력을 요청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

A3 하도급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매담당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의 제조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제품의 구입을 요청하였다는 점에서, 협조요청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물품의 구매강제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⑦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및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법 제12조) |

-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계약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다음 행위는 금지하는 것을 말함.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자기가 구입,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사전에 물품구매대금 등의 결제를 사전에 요청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음을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함.

Ⅱ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법 제12조의2) |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업무상 유의사항

Do

-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한 것을 당해 하도급작업 이외의 작업에 사용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물품대금을 조기결제할 수 있음.
- * 원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급사업자가 전매한 경우 원사업자가 그 물품대금을 조기결제할 수 있음.
-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도록 하고, 납품(기성)이 있을 때 마다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투입한 물량만큼을 납품대금(기성금)에서 차감할 수 있음.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한 원재료나 장비를 훼손하거나 또는 손실을 발생시켜 납품해야 할 목적물의 제도가 불가능하여 조기결제할 수 있음.

Don't

- * 계속적인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실제 투입한 물량에 대한 가액 이상으로 차감하지 말아야 함.
- *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 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 자신이 제공하는 중장비 임대료 등을 당월 기성금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게 하는 행위 또는 장비임대업자의 통상적인 중장비 임대료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사게 하고, 그 물품대금 등을 목적물을 납품하기도 전에 전액 결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포함. 이하 같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 하도급 거래 개시 또는 다량 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아야 함.
- *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말아야 함.

이것만은!

☞ **제조에 필요한 자재, 장비를 공급한 후에, 부당하게 조기결제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포스코PS테크 OO프로입니다. 이번 00발주 건 관련해서, 당사에서 공급한 00장비 있잖습니까? 금번 기성금에서 해당 장비 사용료를 전액 공제 후 잔여분만 지급될 예정입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12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 Q&A

Q1 원사업자 A는 전문업자 B에게 설비공사를 1억원에 위탁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고, 사업자 B는 기성실적에 따라 A에게 1회 기성금으로 2천만원을 청구하여 원사업자 A가 물품대금 1천만원(A로부터 구매한 물품 중 이때까지 투입금액은 200만원)을 차감하고 잔액 1천만원을 B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A1 원사업자 A가 사업자 B에게 구매토록 한 물품이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이나 발주자가 A의 물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함.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A의 행위는 하도급상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위반이고 A가 제1회 기성금 지급시 물품대금전액을 공제하고 차액만 B에게 지급한 것은 하도급상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청구 금지’ 위반임. 원사업자 A가 정당하게 자기

물품을 사용하도록 했다면 원사업자 A는 제1회 기성금 지급시 실투입된 200만원만 차감한 1천800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임.

Q2 수급사업자는 제조위탁을 받은 후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을 구매하여 다른 작업에 사용하였는데, 원사업자가 그 부품대금의 조기결제를 요구시 하도급법 위반여부는?

A2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제조를 위해 사용했어야 할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따르므로 이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물품구매대금 등의 조기결제청구 금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Q3 원사업자가 유상 지급한 원재료의 대금결제에 대하여 하도급대금과 상계하지 않고 별도로 일괄 결제하는 방법이 하도급법 위반인지?

A3 하도급대금과의 상계여부를 불문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시보다 빨리 결제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소지가 있음. 즉, 별도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유상자재 대금을 당해 자재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대한 하도급대금보다 조기에 결제하도록 하면 안됨.

● 심결례

사례 ① 현대삼호중공업(주)는 (유)한국특수산업, (주)WD중공업, (주)태형중공업, 삼강에스피(주)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파이프 피스 도장을 제조위탁함에 있어 보증기관의 지급보증 외에 추가로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음.

심결요지 피심인은 지급보증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하여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였음.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하도급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되는 사항임.

제재내용 【시정명령】

사례 ② 대주건설(주)은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신의 미분양아파트 49세대(주로 1, 2층)를 20개 수급사업자에게 배정·분양하여 자신이 분양하지 못한 아파트 분양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분양을 위한 자금부담은 물론 당초 분양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전매하거나 제3자가 분양받도록 우선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지게함.

심결요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거래를 함으로써 미분양 아파트의 장기 보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로 판단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 징 금】 5억 9,600만원

⑧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하도급법 제17조)

| 개념 |

- 원사업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 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원사업자는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시하여야 할 자료, 자료제시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업무상 유의사항

Do

- * 하도급 계약서상에 대물 변제에 대하여 명백히 합의한 상태에서 대물 변제 하여야 함.

Don't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제품이나 물건으로 지급하지 않아야 함.
- * 당초 하도급계약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대물 변제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대물 변제하였으나 실제 가치가 하도급 대금에 미치지 못해서는 아니됨.

이것만은!

☞ **당초 계약과 다르게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변제해서는 안 됩니다.**

“포스코PS테크 OO프로입니다. 이번 00아파트 창호공사 건 관련해서 말 인데요, 하도급대금 일부는 아파트 0세대를 분양하는 걸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분양가가 시세보다 무척 싸게 나온 건이라, 그 쪽에서도 이득일 거라 보는데요.”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17조 「부당한 대물 변제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 심결례

사례 ① 후지카 대원전기(주)는 (주)두발가스엔지니어링 등 7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1억3천234만9천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함

심결요지 피심인이 (주)두발가스엔지니어링 등 7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자기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 1억3천234만9천원을 물품으로 지급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7조 위반사항으로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 조치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⑨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하도급법 제18조)

| 개념 |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봄.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전속거래 강요 행위 금지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경영상 정보제공 요구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기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까지 경영상 정보제공 요구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고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
 - ② 거래상 지위가 형성되지 않은 거래 개시 단계에서 거래조건을 협상,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Ⅰ 경영상의 정보 유형 Ⅰ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 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 포함)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요구금지 원가 관련 정보 예시】

- ① 원가계산 관련 서류 : 원가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 ② 회계정보 : 매출계산서, 매출처별 거래명세서 등
- ③ 영업정보 : 고객 및 거래처 정보 등

| 정당한 경영상 정보 요구 행위 예시 |

- 원사업자가 관계법령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예 :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구분 지급 또는 직접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금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상호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양산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정산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의3에 근거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체결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경우
 -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유하는 경우
 -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업무상 유의사항

Do

-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상협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가능함.
- *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시 발주처에서 수급사업자의 원가정보를 필수 제출자료로 지정하여 원가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
- * 계약의 특성상 실비를 정산하는 것이 적절한 항목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항목의 실비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
- * 다른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에게 부여된 수급사업자 관리 및 감독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
- * 원사업자가 상생협력과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경영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는 가능함.
- * 산재보험료 산출을 위해 임금대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고, 협약체결에 따른 실적 확인을 위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약체결 내역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함.
- * 원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지원하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하도록 요청 또는 권유하는 것은 가능함.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일정한 현금결제비율로 지급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고 그 범위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하고, 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함.
- * 수급사업자의 효율성 증진,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급사업자가 컨설팅 받고자 하는 경영전략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함.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업교육 채용박람회 실시 및 채용연계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채용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함.

Don't

- * 협력사에 대해 거래단절, 물량축소 등 불이익을 제공할 것을 거래조건으로 내걸면서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 자신의 특허로 개발한 부품이 아닌 일반부품의 제조를 협력사에 위탁하면서, 해당 부품을 자신에게만 납품토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게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 1차 수급사업자의 재 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 계약조건 설정 등 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이것만은!

☞ **수급사업자에게 인사청탁 등의 행위는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포스코PS테크 OO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스코 OO그룹 OO과장입니다. 이번에 00억짜리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귀사가 우리 파트너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어요. 허허,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귀사 재무팀에서 자리가 하나 필요하다면서요? 제 조카 녀석이 이번에 대학 졸업하는데, 어떻게 자리 좀 봐 줄 수 있겠어요?”

⇒ 수급사업자에게 인사청탁 등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하도급법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 심결례

사례 ① (주)포스코케미칼은 19개 협력사에 대해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협력사의 인사·자본·지분 등에 대해 간섭하였는데, 협력사 임원 임기를 설정하여 만료 시 포스코케미칼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선발·부임토록 하고, 협력사들이 지분을 교차보유하도록 하는 등 협력사가 경영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간섭하였음.

심결요지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의 내부 경영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행위로 보아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로 판단하였음.

제재내용 【시정명령】
【서면통지 명령】 5억 8,000만원

10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

| 보복조치의 금지 (법 제19조)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 ② 제16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11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 ③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 탈법행위의 금지 (법 제20조) |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업무상 유의사항

Don't

- *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 등에 신고·조정신청·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정지하거나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이것만은!

☞ 정당한 사유없이 업체를 입찰에서 제외시켜는 안 됩니다.

“팀장님, 이번에 00발주 건 말인데요. 00회사에서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몇 년 전 하도급법 위반으로 당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던 업체인데요. 가격 등 조건은 좋아 보입니다만, 과거 전력도 있고 하니 입찰에서 배제시키는 게...”

⇒ 하도급법 위반 신고 등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심결례

사례 ① 흥화공업(주)는 도로개설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부분 공사를 삼림건설(주)에게 건설위탁하였으나 삼림건설(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서면 지연교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은 바, 익년도 협력업체 등록심사에서 삼림건설(주)를 협력업체에서 제외

심결요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자기가 법을 위반하였음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바, 피심인은 협력업체 등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삼림건설(주)가 공사시공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별로 C 또는 D등급으로 판정하였으며, 평가서에 같은 평점을 받은 타 사업자는 협력업체로 인정하면서 삼림건설(주)만 제외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한 행위는 보복조치로서 하도급법 제19조 위반

제재내용 【시정명령】 【고발】

사례 ② (주)백양은 봉제 임가공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에 의한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이후 한남인쇄 등 27개 수급사업자에게 미부담한 어음할인료 2억8천400만원 지급 한 후 납품 단가의 인하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미 지급한 어음 할인료 중 1억8천500만원을 다시 환수함.

심결요지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어음할인료 2억8천400만원을 지급한 후, 납품단가의 인하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중 1억8천500만원을 환수함으로써,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 의한 어음할인료 지급의무를 면탈하려고 하였는 바, 이는 탈법행위로서 하도급법 제20조를 위반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고발】

• Q&A

Q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 후 합의서와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는 바, 그 후 감사원 감사결과 영수증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영수 확인한 금액보다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적은 것을 확인하여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할 것을 통지하였을 경우, 원사업자의 행위는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탈법행위인지?

A1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 점 및 수급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요구사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영수증의 제출을 명한 것이 아니고 원사업자 스스로 제출한 것이라면 허위자료 제출을 통한 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Q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원사업자의 조업안정과 조업품질의 향상을 위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① 원사업자의 사전 양해없이 지배주주의 임의변경 또는 주식양도를 금지하고, 친인척의 경영참여를 배제토록 하거나, ② 지배주주는 오로지 수급회사만을 경영함으로써 현장밀착 관리가 가능토록 하거나, ③ 자재의 사도급 판단 및 도급총액제 작업범위 조정 등은 원사업자 방침에 의하도록 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A2 ①항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되고, 친인척의 경영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하도급법의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며, ②항은 다소 과도한 경영간섭 또는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문제될 우려가 있으며, ③항도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방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없이 거래를 거절할 목적으로 실제로 작업범위를 축소하는 경우 불공정 약관조항 또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될 수 있음.

11 부당한 특약의 금지 (하도급법 제3조의4)

| 대상 행위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제안요청서, 물량내역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특수조건, 과업내용서, 특약조건, 도급업무내역서, 발주서, 견적서,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합의서, 각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임.

| 위법성 판단기준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계약조건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여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 위반유형

① 서면에 없는 비용 전가

-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설명서 등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에 해당됨.

㉔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 전가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임. 즉,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약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음.

㉕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 전가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됨. 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견적 누락 또는 견적 착오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는 제외함.

㉖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가

-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임.

㉗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비용 전가

- 원사업자가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으로 부당특약의 한 유형임.

㉘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전가

-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임. 단, 해당 작업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

-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계약, 설계도면 등에 기재된 작업공정, 품질, 성능 검사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한 경우를 말함.

㉙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전가

-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 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임.

- 예를 들어, 건산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면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상 하자 담보책임은 3년으로 약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음.

㉔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책임 전가

-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말함. 예를 들면, 천재지변 또는 전쟁, 화재, 전염병, 폭동,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 매장문화재 발견,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을 말함.

㉕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한

- 수급사업자는 원재료의 가격변동이 발생하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직접 신청하거나 원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하도급계약기간 중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를 말함.

㉖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는 일부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 받은 경우 원사업자에게 위탁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을 받을 권리, 법 위반 하였음을 관계기관에 신고, 원사업자에 대한 조정신청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말함.

㉗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을 말함. 또한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도 포함됨.

㉘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및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을 말함.

⑬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및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을 말함. 또한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도 포함됨.

⑭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약정이라고 봄.
 -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계약 해제, 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등의 인도 지연,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업무상 유의사항

Do

- * 부당한 특약은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있어도 내용이 부당하면 처벌됨에 유의하여야 함.
- *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부당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규정을 참고해서 특약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함.
- * 수급사업자에게 특약을 사전에 송부하여 검토시간을 충분히 주고, 수급사업자가 특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함.

Don't

- * 당사의 사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운임비용 또는 보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임비용 또는 보관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 * 책임 부담에 관해 편향적인 보상 조항(원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 *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지 말아야 함.

● 심결례

사례 ① (주)포스코ICT는 2014. 5. 30부터 2014. 10. 16까지 화성이엔티 등 3개 수급사업자와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 관련 '브라질 CSP 제강 Panel & Box 구매' 등 3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능보증 유보금 명목으로 'MC/SC/FC 단계별로 각 5%씩 기기대금의 총 15%를 각 단계별 확인서 발급 이후에

지급'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함(주)포스코ICT는 2014. 5. 30부터 2014. 10. 16까지 화성이엔티 등 3개 수급사업자와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 관련 '브라질 CSP 제강 Panel & Box 구매' 등 3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능보증 유보금 명목으로 'MC/SC/FC 단계별로 각 5%씩 기기대금의 총 15%를 각 단계별 확인서 발급 이후에 지급'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함.

심결요지 원발주자인 브라질 CSP 제철소와 발주자인 포스코건설 사이에 설정된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 관련 대금지급조건을 도급인인 포스코ICT가 하도급계약에까지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 및 목적물의 성능보증과는 무관한 SC단계(원발주와 발주자 사이의 지체상금, 하자책임 등의 정산단계 포함) 및 FC단계(종합준공 이후 제철소에서 양산된 결과물의 품질 점검 포함)의 확인서 발급을 하도급대금 중 일부의 지급과 결부시킨 것이므로 법 제13조가 보장하는 수급사업자의 대금지급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임.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 Q&A

Q1 계약서에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견적누락, 견적착오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약정한 경우 부당특약에 해당하는가?

A1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과실(견적 누락, 착오)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함을 주의해야 함.

7.3 발주자의 의무사항

1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하도급법 제14조)

| 개념 |

- 발주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법 제14조 제1항)
 -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④ 원사업자가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법 제14조 제2항)
-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14조 제3항)
-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

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공제함.(법 제4조 제4항)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법 제14조 제5항)
-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14조 제6항)
- 재하도급의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를 말함.(법 제2조 제10항)

Ⅱ 적용기준(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9조) Ⅱ

-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어야 함.(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제외)
-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 합의는 반드시 3자 간에 동시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묵시적인, 순차적인 직접 지급 합의도 유효)
-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는 하도급 기성분의 총액이 2회의 기성분에 해당할 때임.
-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기지급한 금액은 제외
-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발생(의사표시의 도달 증명 책임은 수급사업자에게 있음)
-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시 민사집행법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공탁 가능
-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 부담

|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 범위 |

① 직접 지급해야 할 금액의 확정

- 직접 지급 금액의 확정이 직접 지급 의무의 전제이며, 직접 지급 금액은 원사업자의 기성검사 및 발주자 또는 감리자 등의 승인(검수)에 의해 확정될 수 있을 것임.
- 원사업자의 비협조 등으로 확정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의 합의에 의할 수 있을 것임.

② 발주자의 직접 지급 한도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 범위임.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 미공제금이 남아있을 경우, 발주자는 직접 지급하기에 앞서 미공제 선급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음.

업무상 유의사항

Do

- * 직접 지급액이 기성 미확인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자가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유보하는 경우

Don't

- * 하도급법상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발주자가 명백히 직접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포스코 PS테크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IV

공정거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1. 공정거래법 관련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	×
<p>■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p> <p>-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행위의 유형을 10가지로 열거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2조 별표2에서는 9가지 유형으로 행위를 열거하고 있음.</p> <p>* 거래거절, 차별적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행위</p>				
<p>1. 거래거절</p> <p>-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제품의 수량,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p>				
<p>• 공급사에 대하여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쟁사와 공동으로 구입을 거절하지는 않는가?</p>				
<p>• 일반 사양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품목에 대해 사용조건, 사양 등을 명기하여 특정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타 업체의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고 특정사업자와 거래하지는 않는가?</p>				
<p>•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비계열 회사를 배제하지는 않는가?</p>				
<p>2. 차별적 취급</p> <p>- 거래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에 따라 부당하거나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p>				
<p>• 대량구매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가격을 차별 하지는 않는가?</p>				
<p>•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에게만 지불조건을 현저히 엄격하게 하거나 우대하지는 않는가?</p>				
<p>• 물품 구매 또는 공사 발주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 대해 구입단가, 선금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히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지는 않는가?</p>				
<p>• 사규, 공문, 계약 등을 통해 계열회사와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유도하지는 않는가?</p>				
<p>• 계열사에 대해 수량, 가격,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유리한 취급을 하는가?</p>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열회사와 거래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구입함으로써 계열회사의 경쟁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아닌가? 			
	3. 거래상 지위남용 - 거래상의 지위가 상대방보다 우월한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방의 기술, 노하우 등을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제공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지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서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의 관계규정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 시공하게 한 후 기성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비용을 미지급하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하게 하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 귀책으로 공기, 납기가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보전해주지 않고, 공사기간 또는 납기연장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금만 추가로 징구하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이익제공] 상대방과 협의 없이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조항을 설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하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이익제공]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이익제공] 계약내용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자기에게만 해석권이 있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가?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	×
	• [불이익제공]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가?			
	• [불이익제공]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가?			
	• [불이익제공]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지는 않는가?			
	• [불이익제공]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종결 후에도 예정가격이나 원가계산상의 오류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거나 이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하지는 않는가?			
	• [경영간섭]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지는 않는가?			
	• [경영간섭] 자기가 거래상대방 직원의 부적격성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경영간섭]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가 타 거래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는 없는가?			
	• [거래강제]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공급사에게 제시하여 거래하도록 강제하는가? *계열사가 생산,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회사에 한하여 거래하는 행위, 회사 납품업체에게 계열회사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2. 하도급법 관련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	×
계약체결전	하도급법 적용 및 관리여부 확인			
	■ 하도급 적용 대상 거래를 별도 관리하고 있는지			
	• 거래업체가 중소기업인가?			
	• 제조, 수리, 용역, 건설위탁 중 하나에 해당되는가?			
계약체결단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1.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 하도급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는가?			
	•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지는 않았는가?			
	•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고 있는가?			
	• 실제 하도급 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는가?			
	• 추가공사시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하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였는가?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지 않았는가?			
	• 발주량 등 거래조건을 속이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경쟁입찰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	×
계약 체 결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3. 물품 구매 강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물의 품질 유지, 개선 등 정당한 사유외에 물품을 지정하여 구입하도록 강요하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원사업자가 구입을 강제하거나 지정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 또는 사용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당시 언급이 없다가 제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이라고 주장하며 고가의 부품 구매를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지는 않는가? 			
	4.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대로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기일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초과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지는 않는가? 			
	5.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요청서를 발급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구목적에 벗어나거나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기술자료 미제공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 특허권 선점, 거래 중단 후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유용하지는 않는가?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	×
계약 체결 단계	6.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시하지는 않는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는가?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	×
계약 이행 단계	1. 선금금 지급			
	•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대로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가?			
	• 법정기일 초과하여 선금금을 지급했으나 초과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지는 않는가?			
	2.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기의 연기를 통보하지는 않는가?			
	• 발주자의 발주 취소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지는 않는가?			
	• 자기가 공급하기로 한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하여 납기, 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지는 않는가?			
	3. 검사 및 결과 통지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는가?			
	• 검사기준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정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불합격처리하거나 서로 합의한 검사기준, 방법, 시기를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불합격 처리하지는 않는가?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	×
계약이행단계	4.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가?			
	• 기술자료 요구시 요구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정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는가?			
	• 요구목적에 벗어나거나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기술자료 미제공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가?			
	•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 특허권 선점, 거래 중단 후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유용하지는 않는가?			
	5. 부당한 경영간섭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시하지는 않는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는가?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	×
대금 지급 단계	1. 하도급대금 지급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가?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가?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이나, 어음 지급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는 않는가?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가?			
	2.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지는 않는가?			
	• 하도급대금 감액시 감액사유와 기준, 감액대상 물량, 감액금액, 감액방법 등 법정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는가?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고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가?			
	•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는가?			
	•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감액하는가?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가? 			
4. 공급원가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물 제조에 필요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안에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개시하고 성실히 임하는가? 			

포스코 P스테크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V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주식회사 포스코PS테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되며,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고시, 지침을 말한다.
-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교육, 감독 등 회사 내부의 준법 시스템을 말한다(이하 “CP” 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란 회사 임원 중 CP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전반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자를 말한다.
- ④ “자율준수협의회”란 자율준수관리자를 자문하고 담당부문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자체점검을 실시·감독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 ⑤ “담당부문”이란 자율준수협의회 위원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감독하는 실 단위 소속부서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⑥ “CP 주관부서”라 함은 CP 업무를 주관하여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 조직 및 책임과 권한

4.1 최고경영자의 지원

-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와 CP 주관부서가 직무수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4.2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사내 임직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그 역할과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 부서에 소속되어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CP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또는 이사회 의결로 새로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4.3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CP 기획, 운영 및 감독
 2. CP 평가·개선 및 운영현황 보고
 3. 기타 CP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포함한 준법경영 지원활동을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에 따른 준법지원인을 겸임할 수 있다.

4.4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자율준수협의회는 각 실별로 위원 1명과 실천리더 1명을 선임하며 자율준수협의회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자율준수협의회는 자율준수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①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인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와 관련이 높은 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 ② CP 주관부서의 리더는 간사로서 자율준수협의회는 실무운영을 총괄한다.

4.5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및 역할

- ① 자율준수협의회는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2인 이상의 위원 요청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율준수 기본방침 설정,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 심의 및 필요 사항 권고, 자문
 2.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서간의 업무 조정
 3. 위원별 담당부문의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실시 및 감독, 그 결과를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통보
 4. 각 위원별 담당부문의 자율점검에 대한 감독
 5.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 자문

4.6 공정거래 실천리더의 선임 및 역할

- ①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담당부문의 자율준수 활동을 위해 적절한 자질을 갖춘 인원을 선별하여 공정거래 실천리더로 임명한다. 공정거래 실천리더는 해당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에서 선임할 것을 권장한다.
- ② 공정거래 실천리더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활동 지원
2. 부서 내 공정거래 관련 상담 및 자문
3. 부서 내 자율점검 활동 주관
4. CP 운영 개선사항 발굴

제5조 업무 절차

5.1 CP의 운영

- ① CP 주관부서는 CP 실행에 필요한 계획을 작성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며, CP 활동내역을 반기 1회 이사회(ESG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② CP 주관부서는 CP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관련 문서를 현업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5.2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 ① CP 주관부서는 임직원이 실제 업무수행의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편람은 CP 주관부서가 판단하여 임직원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제작하고, 주기적(연 1회 이상)으로 개정하며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5.3 교육프로그램 운영

- ① CP 주관부서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1. e-러닝 과정을 이용한 on-line 교육

2. 각 부서별, 계층별 특성에 맞는 off-line 교육
 3. 공정거래 캠페인 및 뉴스레터
 4. 기타 직원들의 공정거래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
- ② CP 주관부서는 교육별 의무 수강부서를 선정하여 이를 공지할 수 있으며, 의무 수강부서로 선정된 부서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CP 주관부서는 의무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미이수자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CP 주관부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평가 및 설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확인된 개선사항을 다음년도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한다.

5.4 현업부서의 공정거래 자율점검

- ① 임직원은 공정거래 웹사이트, 모바일 앱, 편람 등의 자율점검 Check list를 활용하여 일상업무 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 ② 자율점검 결과 범위반 가능성이 높거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CP 주관부서 등을 통해 범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업무를 수행한다.

5.5 공정거래 모니터링

- ① CP 주관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리스크가 높은 부문(부서)에 대해 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내 감사부서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수감부서는 CP 주관부서의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③ CP 주관부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경영층에 보고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한다.

5.6 CP 운영의 효과성평가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

으로 CP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취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체평가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CP 등급평가를 받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CP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5.7 상담,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① CP 주관부서는 부서 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인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 ② 각 부서 공정거래 실천리더 또는 업무 담당자는 자율점검 시 해당 업무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CP 주관부서에 상담을 의뢰해야 한다.
- ③ 상담요청인은 상담 전 공정거래 웹사이트, 모바일 앱, 편람 등을 통한 자율점검을 먼저 실행한 후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 ④ 상담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내용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상담인은 필요시 관련 정부부처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상담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 ⑥ 상담인은 현업부서에서 상담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이를 CP 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CP 주관부서는 임직원이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
- ⑧ 회사는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자의 신분 누설,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및 색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신고자에게 고용관계 등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5.8 제재 및 포상

- ① CP 운영지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대해 CP 주관부

- 서나 이를 인지한 부서 책임자는 징계 주관부서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서 책임자는 위반사실을 CP 주관부서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 ② CP주관부서의 징계요구는 내부감사 지침에 따르고, 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취업규칙 및 상벌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③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민·형사상 제재로 벌금을 부과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보전할 의무가 없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임직원 및 부서에 대해 포상하거나 인사부서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6조 기록 및 관리

해당없음.

제7조 서식종류 및 작성방법

해당없음.

끝.

부 칙

이 지침은 2023. 6.1부터 제정, 시행한다.

posco
포스코PS테크

2024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발행처 포스코PS테크 정도경영실

발행일 2024년 6월

편집·제작 (주)블루리밴드